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2008년 지방건의 -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 행정안전부 6대 분야 100건 규제목록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엮니다

경 기 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

 **경기도행정자료실**



B00000035700

목 차

I. 지방건의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5
-----------------------------------	----------

II. 지방의견 기업규제 협의 목록(6대 100건)	23
---	-----------

1. 산업단지 관련 제도 개선	25
-------------------------------	-----------

1-1.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27
1-2. 산업단지 지정 권한 위임	28
1-3. 대불산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9
1-4. 산업단지 내 교통이용체계 개선	30
1-5. 산지에서의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산지전용	31
1-6. 산업단지 녹지율 법적기준 적용	33
1-7.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위임	34
1-8.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국비지원	35
1-9. 농공단지 분양가격, 지정절차, 지정면적, 개발기준 관련	36
1-10. 절차 간소화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민자유치 활성화	37
1-11. 낙후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확대	38

2. 외국인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39
--------------------------------	-----------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화 ..	41
2-2. 경제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1)	42
2-2. 경제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2)	43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1)	44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2)	45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3)	46
2-4.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47
2-5.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간소화 및 입주요건 완화	48
2-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1)	49
2-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2)	50
2-7. 경제자유구역 국내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52
2-8. 경제자유구역내 건축허가 관리권 일원화	53

2-9.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54
2-10.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	55
2-11. 외국인기업 설립 관련 규정의 명확화	56
2-12.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 확대	57
2-13. 경제자유구역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감면	58
2-14. 외투기업 지역 전략산업 투자 지원	59
2-15.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활성화 위한 외투기업 지분요건 완화 ·	60
2-1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61
2-17.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	62

3. 토지이용 개선 63

3-1.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 위임	65
3-2.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기준완화	66
3-3. 용도지역 변경 전 설립된 기존공장 규제 완화	67
3-4.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68
3-5. 강릉광역권 R&D특구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완화	69
3-6. 국가산단지구내 용도지역 변경 및 높이 완화	70
3-7.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시 산지전용 면적제한 완화	71
3-8. 신규산업단지 지정 제한 완화	72
3-9. 매장 문화재 조사대상 범위 조정	73
3-10.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건 완화	75
3-11. 도시관리계획 협의 권한위임 확대	76
3-12.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77
3-13. 묘지설치 거리제한 기준완화	78
3-14.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79
3-15.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건의	80
3-16.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81
3-1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위원 수 조정	82
3-18.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 삭제	83
3-19. 보상액의 가격시점 조정	84
3-20.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적용 일원화	85
3-21. 산지전용시 대체지정제도 폐지	86
3-22.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부담률 개선	87
3-23. 농업보호구역내 공장 업종변경규제 완화	88
3-2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조정	89

3-25. 공장 점유 공유재산 매각 개선(1)	90
3-25. 공장 점유 공유재산 매각 개선(2)	93
3-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94
3-27. GB내 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 허용	95
3-28.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행위제한 완화	96
3-29. 광역권 설정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애로	97
3-30.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1)	98
3-30.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2)	99
3-30.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3)	100
3-31.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업종제한 완화	101

4. 환경규제 개선 103

4-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규제 완화	105
4-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16
4-3.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산정방식 개선	107
4-4. 연료사용지역 규제 완화	108
4-5. 대기기본부과금 부과 면제범위 확대	109
4-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개선	110
4-7. 구리 관련 폐수배출기준 완화	111
4-8.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운영	112
4-9. 광산개발 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완화	114
4-10.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업무 이관	115
4-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선	116
4-12. 자연공원 내 궤도·삭도 설치 제한규정 완화	117
4-13. 배출사업장 신고제도 개선	118
4-14.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 개선	119
4-15.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간 조정	120

5. 수도권·기업규제 완화 121

5-1. 수정법 폐지·대체입법 추진	123
5-2.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124
5-3. 과밀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125
5-4.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 규제개선	126
5-5. 수도권내 공공법인의 신·증축 금지규제 완화	127
5-6. 외부감사 대상 법인 적용기준 상향조정	128

5-7. 연접개발 제한 합리적 개선	129
5-8. 영업 폐업신고 연계처리	130
5-9. 개별공장 입지요건 완화	131
5-10.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 폐지	132
5-11. 물류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33
5-12. 부산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	134
5-13. 건설공사 영업정지·통보규정 등 개선	135
5-14.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제한 완화	136
5-15. 건설업 양도의 공고규정 개선	137
5-16. 공장증설 승인절차 간소화	138
5-17.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1)	139
5-17.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2)	140
5-18. 통신판매업 직권 폐지 사항 추가	141
5-19.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143
5-20. 항만과 연접한 공단내 수출차 도로운행 규제완화	144

6. 기 타 145

6-1.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법인세 부과 개선	147
6-2.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개선 건의	148
6-3.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지원범위 확대	150
6-4.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변경요청	151
6-5.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기준완화	152
6-6. 보상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 확대	153

지방건의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 실질적인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핵심규제 선정 및 집중관리
 - 부처협의 결과 수용과제는 조속입법, 중·장기 과제는 지속 협의

□ 그 간의 추진상황

- 지방건의 기업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부처 협의
 - 1~3차에 걸쳐 지방건의 과제 6대 분야 100건 발굴
 - ※ 산업단지(11건),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17건), 토지이용 개선(31건), 환경규제개선(15건), 수도권·기업규제(20건), 기타(6건)
- 지역담당자를 통해 지방건의 기업규제 소관 부처와 개선방안 협의 및 검토의견 요청

□ 부처협의 결과

- 부처의견 : 수용 45건, 검토 27건, 수용곤란 28건

구 분	건 수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계	100	45	27	28
1차 지방건의 과제(4월)	60	29	20	11
2차 지방건의 과제(6월)	14	4	5	5
3차 지방건의 과제(7월)	26	12	2	12

- 주요 수용내용
 - 농공단지 건폐율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현행 60%→ 70%)
 -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연접개발제한 거리 축소 500미터→250미터)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업종제한 완화(숫공장 등 23개 업종 허용)

□ 향후 추진계획

- 수용과제는 조속 입법 추진, 중·장기 과제는 개선방안 지속 협의
 - 관리 대상 규제는 지역담당제를 통해 적극 개선 및 추적관리

1. 산업단지 관련 제도개선**○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08.9)**

-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현행 60%→ 70%)

○ 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08)

- 현재 3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 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 폐지

○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08) 및 허가권한 위임('08)

- 현행 경사도(25도이하), 절개면 수직높이(15m이하) 등 산지전용 허가 기준은 경관 및 자연재해 우려가 있어 완화하지 않되,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도록 개선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과 관계없이 시·도지사 위임

○ 산업단지 녹지율 법적기준 적용('08)

- 산업단지 조성관련 협의시 법령기준(5~10%)보다 통합지침에 의거 녹지비율을 상향적용(14~31%) 하던 것을
- 법령에서 정한 사항보다 과도하게 녹지비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기준 마련 예정

○ 농공단지 지정절차 간소화('08)

- 농공단지 지정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시('08.9.6) 농공단지 지정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거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절차 간소화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민자유치 활성화('08.7)

-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 시도지사 권한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토록 개선하여, 향후 권역별 계획 변경승인 없이 관광(단)지 지정신청이 가능

2. 외투·경제자유구역 관련

○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간소화('08)

- 산지전용 협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08.12)

-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개발계획에 의거 수립한 실시계획을 또다시 위원회 심의·의결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경제자유구역 국내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 자치단체 여건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 허가제에 대하여는
- 선심성 감면 등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을 병행하여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08)

- 경제자유구역내 학교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교육기관 해외송금 허용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08.9)

-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하한액의 120%(개방형 130%)이내에서 단체장이 자율 결정하되 그 이상의 경우는 행안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협의권 폐지

○ 경제자유구역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경제자유구역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50%를 감면 허용

3. 토지이용 개선

○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 위임('08)

-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던 것을 폐지하여 특별시·광역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기준 완화('08.5)

- 산업용지 최소분할 면적기준을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보완하였으며,
- 향후 최소분할면적관련 요청시 관리기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 용도지역 변경 전 설립된 기존공장 규제완화('08.9)

- 용도지역 변경 전(관리지역 건폐율 40%) 기 설립된 공장이 용도지역 변경(녹지지역 건폐율 20%) 으로 기업활동이 제약되었으나
- 관리지역에서 허가된 기존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상향 조정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산지전용 면적제한 완화

- 지형여건, 사업성격, 제도의 도입취지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면적 제한 예외를 다양하게 인정

○ 신규산업단지 지정제한 완화('08.12)

- 미분양율이 국가산단 15%, 일반산단 30%이상인 경우 신규산단 지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이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 매장문화재 조사대상 범위 조정

- 민간의 조사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화재청 산하 법정법인)에 조사단을 설치·운영토록 추진하여 국가차원의 대규모 조사기관 설립 및 조사인력 양성 예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08)

-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의를 농림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지구·단지 등에 대하여는 농림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 폐지(1차 건의)
- 농업진흥지역 지정이전 인허가된 대지, 공장용지는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 정정 가능(2차 건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협의 권한 위임 확대

- 개발용도로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농지 전용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추진

○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08)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부지면적 일정규모 미만의 자기소유 주택 등에 대해 연접개발 예외 적용
- 연접개발제한 거리 축소(500미터→250미터)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등록공장에 한해 자연녹지 지역의 지정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폐율 완화

○ 산지전용 시 대체지정제도 폐지('08.8)

- 산지전용(임업진흥구역 해제)시 다른 지역의 동일 면적을 임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던 산지전용 시 대체지정제도 폐지

○ 농업보호구역내 공장 업종변경 규제 완화('08)

-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정정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행위제한 완화('08.7)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7.28 시행예정)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의 규제 완화
- 관광지 등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확대($300\text{m}^2 \rightarrow 660\text{m}^2$), 관광지 등 숙박시설 바닥면적 확대($660\text{m}^2 \rightarrow 1,000\text{m}^2$) 등

○ 광업권 설정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애로('08.12)

-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개발행위 인·허가 시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개발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채굴권을 인정
- 채굴의 제한규정을 현행 건축물의 지표·지하 30m이내에서 지표 50m, 지하 150m 이내로 강화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업종제한 완화('08.9)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폐수관련 업종(숨 및 실 염색가공업 등 79개) 공장 설립을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공장의 제한업종 79개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솥공장, 전통죽염제조업이 포함된 23개 업종을 허용업종으로 전환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입지를 용이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4. 환경규제 분야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절차 간소화('08.12)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매5년) 수립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시행계획(매년) 수립시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받고 있음

- 통상 3~4개월 걸리는 시행계획 승인절차를 앞으로 승인기한을 60일 이내로 법정 의무화하여 행정소요기간 단축

○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산정방식 개선('08.7)

- 지자체의 배출부하량 산정시 기준배출부하량의 10%의 안전율을 일률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수질 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
- 2단계('11~'15) 기본계획 수립전까지는 1단계('04~'10) 부하량의 30%내에서 개발사업 협의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60%까지 상향조정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운영('09.3)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된 현행 체제를 “(가칭)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단일화
- 일정규모이하 도시관리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제외 추진

○ 광산개발 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완화('08)

- 채광계획 인가시 광구단위 기준 개발면적 5,000m² 이상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앞으로 개발면적을 광구단위가 아닌 실제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업무 이관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자연증감 할당부하량 감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용량을 개발계획 할당부하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변경을 통하여 가능토록 함

○ 배출사업장 신고제도 개선('08.12)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관련 환경법령 중 의제처리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신고 하던 것을
-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처리」에 포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의 변경신고, 사업자의 변경신고 의제 처리 추가

○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 개선('08.12)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제외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신고제외 지역의 단계적 확대 검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중장기입법계획에 따라 '09년 「소음·진동규제법」 하위법령 개정시 검토 추진

5. 수도권·기업규제 분야

○ 연접개발제한 합리적 개선('08.9)

- 연접개발 제한규제(3만 m^2 미만)로 기존공장의 생산라인 확충이 어렵고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연접개발 적용 예외기준 완화
- 연접개발 제한의 예외가 되는 “진입로가 주간선도로와 도로법상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를 “읍·면지역의 농어촌도로”까지 확대

○ 영업폐업신고 연계처리('08.12)

- 영업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영업허가관청에 이중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영업허가관청이 직권 폐업처리토록 민원절차 개선

○ 개별공장 입지요건 완화('08.12)

-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은 개별공장 입지요건에 대해 개별법에서 정한 제한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 지침을 개정하여 개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 폐지('08.6)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매 5년 단위로 시·도별 개발물량을 제한하던 것을 지자체 자체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물류시설 공급 부족 해소

○ 건설공사 통보의무제도 개선('08)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을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던 것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합·간소화

○ 건설업 양도의 공고규정 개선('08)

- 종합건설업 양도공고는 2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그 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일간지,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관련협회 발행 일간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을
- 관련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과 연접한 공단내 수출차 도로운행 규제 완화('08.12)**

- 항만과 연접된 공단내의 선적을 위해 가까운 거리를 운행함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 임시운행기간이 1일이내로서 허가관청이 허가번호판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허가 수수료를 면제함

6. 기타 규제 분야

○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개선('08.12)**

-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1년→3년)하고 재고용시 의무출국제도를 완화

○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 기준일 변경('08.9)**

-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 기준일을 회계처리의 복잡성, 민원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30일 이내에서 일정기간 연장 추진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기준완화('08.12)**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의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정지기간(현행 3월)을 단축하거나 과태료로 갈음하는 등 행정처분기준 경감 추진

붙임 2

지방건의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 건의 기관별 과제 건수(19개 기관 131건 ※ 기관별 중복과제 포함)

건의기관	건수	건의기관	건수	건의기관	건수
서울특별시	12	부산광역시	10	대구광역시	2
인천광역시	2	광주광역시	4	대전광역시	4
울산광역시	8	경기도	12	강원도	6
충청북도	8	충청남도	4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3	경상북도	18	경상남도	12
제주특별자치도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4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3	-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별 과제 건수(18개 기관 109건 ※ 과제별 중복부처 포함)

중앙행정기관	건수	중앙행정기관	건수	중앙행정기관	건수
국토해양부	40	지식경제부	19	환경부	16
기획재정부	6	산림청	7	행정안전부	3
농림수산식품부	5	방송통신위원회	2	국방부	1
교육과학기술부	1	보건복지가족부	2	노동부	1
문화체육관광부	1	소방방재청	1	문화재청	1
중소기업청	1	공정거래위원회	1	금융위원회	1

□ 부처협의 결과(6대 분야 100건)

구분	건수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계	100	45	27	28
산업단지 관련	11	6	1	4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17	6	9	2
토지이용 개선	31	16	4	11
환경규제 관련	15	7	4	4
수도권·기업규제	20	7	8	5
기타	6	3	1	2

※ 1차 60건: 수용 29건, 검토 20건, 수용곤란 11건 2차 14건: 수용 4건, 검토 5건, 수용곤란 5건
 3차 26건: 수용 12건, 검토 2건, 수용곤란 12건

□ 규제개혁 건의 과제

연번	분야	규제개혁 건의 과제	소관부처	건의기관	검토결과
1	산업단지 관련 (11건)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부산·광주·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일부수용
2		산업단지 지정 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울산·전북	수용
3		대불산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전남	수용곤란
4		산업단지 내 교통이용체계 개선	국토해양부	대구	수용곤란
5		산지에서의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산지전용	산림청	울산 강원	수용
6		산업단지 녹지율 법적기준 적용	국토해양부	울산	수용
7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울산	수용곤란
8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전북	중장기검토
9		농공단지 분양가격, 지정절 차, 지정면적, 개발기준관련	국토해양부	경북 김천시	일부수용
10		절차 간소화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민자유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경북 청송군	일부수용
11		낙후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경북 영덕군	수용곤란
12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17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의 특별법화	지식경제부	경기 인천청	중장기검토
13		경제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 배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경기 인천청	중장기검토
14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지식경제부 환경부·산림청	경기·전북 ·부산청	일부수용
15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지식경제부	인천청·부산청 광양청	수용
16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간소화 및 입주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부산청	중장기검토
17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경기 인천청	수용곤란
18		경제자유구역 국내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행정안전부	경기 인천청	일부수용

연번	분야		규제개혁 건의 과제	소관부처	건의기관	검토결과
19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17건)	1차 건의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허가 관리권 일원화	지식경제부	광양청	중장기검토
20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기· 경북·인천청 ·부산청	일부수용
21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체계 개편	행정안전부	전북 인천청	수용
22			외국인기업 설립 관련 규정의 명확화	지식경제부	서울	중장기검토
23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 확대	지식경제부	서울	중장기검토
24			경제자유구역 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전액감면	산림청	전남	일부수용
25			외투기업 지역 전략산업 투자 지원	지식경제부	전북	중장기검토
26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활성화 위한 외투기업 지분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경남	중장기검토
27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지식경제부	인천청 광양청	수용곤란
28			2차 건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익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국토해양부	부산
29	토지이용 개선 (31건)	1차 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대전	수용
30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기준 완화	지식경제부	충남 경남	수용
31			용도지역 변경 전 설립된 기존 공장 규제 완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경기	일부수용
32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대전	수용곤란
33			강릉광역시권 R&D특구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강원	수용곤란
34			국가산단지구내 용도지역 변경 및 높이 완화	국토해양부	대전	중장기검토
35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산지 전용 면적제한 완화	환경부·산림청 지식경제부	강원	일부수용
36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전북	수용
37			매장 문화재 조사 대상 범위 조정	문화재청	전북	일부수용
38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건 완화	농림수산물부	경남	수용

연번	분야	규제개혁 건의 과제	소관부처	건의기관	검토결과
39	토지이용 개선	1차 건의 도시관리계획 협의 권한위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강원	수용
40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경북 고령군	수용
41		묘지설치 거리제한 기준완화	보건복지가족부	경북 고령군	수용곤란
42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산림청	경북 고령군	일부수용
43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건의	국토해양부	경기 의왕시	일부수용
44		2차 건의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국토해양부	부산	중장기검토
4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위원 수 조정	국토해양부	부산	중장기검토
46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 삭제	국토해양부	부산	중장기검토
47		보상액의 가격시점 조정	국토해양부	부산	수용곤란
48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적용 일원화	국토해양부	부산	수용곤란
49		3차 건의 산지전용 시 대체지정제도 폐지	산림청	충북	수용
50		환지방식개발의 토지부담률 개선	국토해양부	경북 포항시	수용곤란
51		농업보호구역내 공장 업종변경 규제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경북 칠곡군	수용
5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인천	수용곤란
53		공장 점유 국·공유재산 매각 개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	수용곤란
5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국토해양부	울산	수용곤란
55		G·B내 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 허용	국토해양부	울산	수용곤란
56		수산자원보호 구역 재조정 및 행위 제한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경남	일부수용
57		광업권설정으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 애로	지식경제부	경남	일부수용

연번	분야		규제개혁 건의 과제	소관부처	건의기관	검토결과
58	토지이용 개선	3차 건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	환경부·산림청 지식경제부	경남	수용곤란
59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업종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경남 합천군	일부수용
60	환경규제 개선 (15건)	1차 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규제 완화	환경부	광주 충북	수용곤란
61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환경부	광주 충북	수용
62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산정방식 개선	환경부	광주	수용
63			연료사용지역 규제 완화	환경부	대전	수용곤란
64			대기기본부과금 부과 면제범위 확대	환경부	충북	중장기검토
6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개선	환경부	부산	중장기검토
66			구리 관련 폐수배출기준 완화	환경부	경기	수용곤란
67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의 통합 운영	환경부	울산·충북·충 남·경남·제주	일부수용
68			광산개발 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화	소방방재청	충북	수용
69		2차 건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업무 이관	환경부	경북 고령군	일부수용
7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선	환경부	경북 고령군	중장기검토
71		3차 건의	자연공원 내 궤도·삭도설치 제한규정 완화	환경부	강원	중장기검토
72			배출사업장 신고제도 개선	환경부	경북 포항시	수용
73			소음·진동 배출시설허가·신고 제도 개선	환경부	경북 포항시	수용
74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기간 조정	환경부	경남 하동군·남해군	수용곤란
75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	1차 건의	수정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국토해양부	경기	중장기검토
76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지식경제부	경기	중장기검토
77			과밀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서울	중장기검토

연번	분야	규제개혁 건의 과제	소관부처	건의기관	검토결과
78	수도권·기업규제완화 (20건)	1차건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 규제개선	국토해양부	서울	중장기검토
79			국토해양부	서울	중장기검토
80			금융위원회	대구	중장기검토
81			국토해양부	충남·경남	일부수용
82			보건복지가족부	충남	일부수용
83			국토해양부	울산·경북	수용
84			국토해양부	경기	수용
85			국토해양부	서울	중장기검토
86		2차건의 부산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	국토해양부	부산	수용곤란
87			국토해양부	경북	일부수용
88			국토해양부	경북	수용곤란
89		3차건의 건설업 양도의 공고규정 개선	국토해양부	경북	수용
90			지식경제부	경북·고령군	수용곤란
91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서울	수용곤란
92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중장기검토
93			기획재정부	서울	수용곤란
94			국토해양부	전북	일부수용
95	기타 (6건)	1차건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법인세 부과 개선	기획재정부	전북	수용곤란
96			노동부	충북·경남	일부수용
97			중소기업청	서울	중장기검토

연번	분야	규제개혁 건의 과제	소관부처	건의기관	검토결과
98	기타	1차 건의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변경요청	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수용
99		2차 건의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수용
100		3차 건의 보상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 확대	국토해양부	부산	수용곤란

지방건의 기업규제 부처협의 결과

- 6대 분야 100건 규제목록 -

2008. 8.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여 백

1. 산업단지 관련 제도 개선

여 백

①건의기관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시 기업지원팀 행6급 윤 효중(051-888-8032)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최 정민(02-2110-6190)
⑤제목	1-1.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사업확장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아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 농공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현행 농공단지의 건폐율 60%이하 및 용적률 150%이하를 각각 80%이하 및 300%이하로 상향 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4조 및 제85조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원칙적으로 기존 농촌지역에 입지한 농공단지가 도시의 확대로 도시와 인접하게 된 경우는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산업단지의 건폐율(80%)이나 용적률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비도시지역내 설치 가능 ▷ 현행 농공단지내 건폐율 및 용적률은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같은 비도시 지역(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폐율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 ○ 다만, 농공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일부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8.6.5) ○ 제27회 국무회의 개정안 상정('08.7.1)		

①건의기관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시설6급 이 기동(052-229-2751)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효정(02-2110-6180)
⑤제목	1-2. 산업단지 지정 권한 위임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330만^m² 이상인 산업단지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필요 - 중앙부처 협의기간 장기화로 산업단지 지정 지연 ○ 330만^m²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 폐지 가능 ※ '08년 규제완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중인 사항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법개정안 국회제출(6월)		

①건의기관	전라남도 전략산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6급 손 명도(061-286-3941)
③소관부처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효정(02-2110-6180)
⑤제목	1-3. 대불산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대불산업단지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건축행위 규제에 기업활동 위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탄약고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탄약 및 폭발물 폭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장된 탄약의 종류 및 저장량 등을 고려 최소한의 안전거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해제 불가함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대구광역시 기업지원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정6급 양 병춘(053-803-3392)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동서(02-2110-8670)
⑤제목	1-4 산업단지 내 교통이용체계 개선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대규모 산업단지내 영세기업체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이 곤란하여 - 근로자의 출퇴근에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취업기피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규정을 개정하여 -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을 '회사,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추가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의 사업을 할 수 없음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반발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질서 문란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울산광역시, 강원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시설7급 이 정용(052-229-3354)
③소관부처	산림청 산지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원수(042-481-4141)
⑤제목	1-5. 산지에서의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산지전용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산지전용허가기준(산림청 고시)을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 수준으로 완화 - 평균경사도 : (현행) 25도 이하 → (개선) 30도 이하 - 절개면 수직높이 : (현행) 15m 이하 → (개선) 30m 이하 ○ 산업단지 내 산지전용 허가제도 폐지 - 산업단지 지구지정 협의(1개월 이내) 받지 않도록 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규제 해소(산지관리법 제14조 개정) ○ 산지 330만㎡이하 등의 산업단지 개발관련 산림청장의 지구지정 협의권 폐지, 시·도지사가 결정(산지관리법 제8조) -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① 평균경사도 및 절개면 수직높이 : 일부 기 반영 ○ 도시계획시설기준은 주로 평지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산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임 ○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지 전용시 경사도 및 절·성토면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사도 및 수직절개면의 높이를 완화할 경우 경관 및 자연재해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함 *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액 : ('05) 1,174억원 → ('06) 3,184억원 ○ 다만, 현행의 경사도, 절개면 수직높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08.4.17) 되어 있으므로 현행제도 하에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함			
	② 산업단지 내 산지전용 허가제도 폐지 : 수용 곤란 ○ 지구지정과 인·허가를 의제하는 실시계획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지구지정을 이유로 산지전용 허가제도 폐지는 불가함 ※ 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중 이므로 동 법률에 따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할 것임			
	③ 산지 330만㎡이하 등의 산업단지 개발관련 산림청장의 지구지정 협의권 폐지, 시·도지사가 결정 : 일부 수용 ○ 산지에서의 구역 등 지정 협의는 산지 면적 규모별로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협의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도지사에서는 산지전용면적 200ha(보전산지의 경우 50ha)이하의 산지협의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05.5~'07.2 동안 지정 협의한 산업단지 15개 단지의 평균 산지면적은 103ha로서 모두 현행 시·도지사 권한에 의해 처리 가능한 규모임 ○ 향후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음('08.6.30까지 개정 완료)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제29회 국무회의 개정안 상정('08.7.16)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08.7.24)			

①건의기관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시설6급 이 기동(052-229-2751)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효정(02-2110-6180)
⑤제목	1-6. 산업단지 녹지율 법적기준 적용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산업단지 조성관련 협의시 법령 기준(5~10%)보다 녹지비율 상향 적용(14~31%) - 환경분야 기관협의 및 각종 위원회 심의시 기준보다 높은 녹지율 적용으로 실질적인 산업용지 축소되고, 분양가 상승 ○ 산단 조성시 법적 녹지 확보기준을만 준수하도록 규정 신설 - 산업단지 주변이 임야지역 이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첨단 업종의 경우 법적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필요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환경관련 협의 등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보다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기준을 만들어 협의시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 첨단업종 등의 녹지율 완화 등은 통합기준 마련 시 검토 예정 *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3.1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통령보고)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제22회 국무회의 공포안 상정('08.5.27)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08.6.5) ○ 시행예정('08.9.6)		

①건의기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시설6급 이 득균(052-229-4381)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효정(02-2110-6180)
⑤제목	1-7.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위임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국가산단의 확장, 개발계획 변경시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절차에 장기간 소요,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 불가 ○ 국가산업단지의 확장·개발계획 변경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49조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현제도 주요유치업종의 변경이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 산업법 제49조제1항제1호 ○ 국가산단은 일반산단과 다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정되므로 지정면적의 변경은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정 철 진(063-280-3615)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성 수(02-2110-8178)																				
⑤제목	1-8.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국비지원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해 국비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비 사업 추진이 곤란 -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 (도로, 녹지, 하수도, 녹지공간 등) 및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 필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노후산단)의 경우 공공·지원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공간구조와의 부조화 등 문제가 있어 재정비사업 추진 필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산업시설</th> <th>공공시설</th> <th>지원시설</th> </tr> </thead> <tbody> <tr> <td>노후산단(42개)</td> <td>69.2%</td> <td>24.2%</td> <td>6.4%</td> </tr> <tr> <td>전체 단지</td> <td>51.9%</td> <td>31.3%</td> <td>16.8%</td> </tr> <tr> <td>90년대 조성</td> <td>53.7%</td> <td>27.8%</td> <td>18.5%</td> </tr> <tr> <td>2000년대 조성</td> <td>52.9%</td> <td>34.5%</td> <td>12.7%</td> </tr> </tbody> </table>			구 분	산업시설	공공시설	지원시설	노후산단(42개)	69.2%	24.2%	6.4%	전체 단지	51.9%	31.3%	16.8%	90년대 조성	53.7%	27.8%	18.5%	2000년대 조성	52.9%	34.5%	12.7%
	구 분	산업시설	공공시설	지원시설																			
노후산단(42개)	69.2%	24.2%	6.4%																				
전체 단지	51.9%	31.3%	16.8%																				
90년대 조성	53.7%	27.8%	18.5%																				
2000년대 조성	52.9%	34.5%	12.7%																				
* 재정비 사업이란 일종의 도시재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산업단지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 ○ (재정부)는 노후산단 재정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공장 및 토지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국비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재정비 사업에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부에 협조요청 추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투자유치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기능7급 김창호 054-420-62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사무관 김효정 02-2110-6180
⑤제목	1-9 농공단지 분양가격, 지정절차, 지정면적, 개발기준 관련		
⑥건의내용	<제도현황> ○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산정시 조성원가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어려움 ○ 지정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장기간 소요함 ○ 지정면적을 시군구당 100만㎡, 단지별 33만㎡로 제한 ○ 경사도 20° 초과되는 지역은 입지가 제한되어 산지비율이 높은 시군구의 경우 지정 곤란 <건의 주요 내용> ○ 분양이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조성원가에 포함 ○ 승인은 협의로 협의는 사후 보고로 조정 ○ 시군구당 지정면적 제한 폐지 ○ 산지율에 따라 경사도 상향조정		
⑦관련 규제내용	해당없음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 공공시설물은 산업단지 준공시 관리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므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수용곤란)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시('08.9.6) 농공단지 지정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거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관계 기관 협의는 관련 법상의 저촉 사항 및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후보고로 조정하는 것은 곤란(일부기수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수요사업 시행자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전에 입주협약서 등에 의하여 수요가 확인된 경우 지정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 추진중(강길부의원 대표발의. 08.8.7) ○ 환경부 운영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서도 급경사지역(경사도 20~30°)에 대하여는 입지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절대적 기준은 아님) 급경사지역에 대한 입지완화를 위하여는 관계부처(환경부, 산림청) 의견 필요		
⑨해외사례	없음		
⑩추진일정	없음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문화관광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정진원(054-870-6238)
③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수진(02-3704-9737) corn115@mcst.go.kr
⑤제목	1-10 절차 간소화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민자유치 활성화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관광(단)지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함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 과다 시간 소요 <건의 주요 내용>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주기 단축 : 5년 ⇒ 3년 ○시도지사 권한으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변경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⑦관련 규제내용	※시·도에서 수립한 권역계획 변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됨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주기 단축 : 5년 ⇒ 3년(수용곤란) - 권역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10년)에 따라 중기적 관점에서 관광여건 및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 등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수립하는 계획임 - 따라서, 수립시기 단축시 중기적 관점의 개발계획 부재로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시도지사 권한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토록 개선(수용) - 관광(단)지 지정(변경) 신청시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 기준 절차 삭제를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중임에 따라, 향후 권역별 계획 변경승인 없이 관광(단)지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임. * '08.3월 "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제도개선하기로 결정된 과제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관광진흥법 개정안(권역계획 변경승인 없이 관광단지 지정신청) - '08.4 관광진흥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08.5 입법예고, '08.6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08.7~8 국회제출 예정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지역경제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정8급 김규성 054-730-6241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서기관 이동민 02-2110-8176
⑤제목	1-11. 낙후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확대		
⑥건의내용	<제 도 현 황> ○ 산업단지내 기반시설비 비용보조 - 50%내 보조하되 산업단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보조 가능 ○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 제외) <건의 주요 내용> ○ 농공단지처럼 낙후지역 비용보조 기준을 명시 - 단지조성비 지원 : 일반농어촌(평당 15천원), 추가지원농어촌(평당 50천원), 우선지원농어촌(평당70천원)		
⑦관련 규제내 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사항이 아님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지를 개발한 후, 일반기업에 분양하여 개발비용을 회수하므로 단지내부 기반시설 비용보조는 국가재정상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 - 외환위기 이후 미분양 산단의 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로 전환한 경우(국민임대산단)에 기반시설비 비용보조 (총사업비 30% 수준) - 산업단지내 비용보조는 분양가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낙후지역과 같이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은 별도 지원 필요성이 낮아 지원한 사례가 없음 ○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전액 지원하나 농공단지는 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제도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지원사항이 다른 것이므로 규제사항이 아님		
⑨해외사례	없음		
⑩추진일정	없음		

2. 외국인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여 백

①건의기관	경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행5급 김범수(032-453-7111)
③소관부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봉준(02-2110-4622)
⑤제목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 - 경제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타 법률규제 일괄 배제 ※ 규제무풍지역(Regulation Free Zone) 으로의 전환 - 중앙정부 권한 중 실시계획 승인권 등 대폭 위임 - 각종 부담금 감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및 부담금 감면 조항 직접 규정 등은 소관부처(국토해양부 등)와의 협의가 필요 ※ 동 건의내용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08.5월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 08.9월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①건의기관	경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기도 산업정책과 방 대혁(031-249-4607)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유리(02-2110-6175)
⑤제목	2-2. 경제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한 개발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국내 기업의 공업용지 물량 제한 폐지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명문화 필요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⑧부처의견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써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의 대부분을 배제하고 있음 * 입주외국인투자기업 규제특례사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권역별 행위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 부과), 제18조(대학·공장 총량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 규제) ○ 그러나 국내기업을 포함하여 수도권 규제의 전면배제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이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국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전면 배제시 국내기업 중심으로 입주하여, '외국인 투자촉진'이라는 본래 목적에 배치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내 수도권규제 전면배제는 중장기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개편(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전환)시 검토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12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 '09~ : 실천계획에 따른 단계적 제도개선		

①건의기관	경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기도 산업정책과 방 대혁(031-249-4607)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선 연태(02-2110-46425)
⑤제목	2-2. 경제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① 경제자유구역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명문화 요구 ② 외국인투자기업 신·증설 업종 확대(25개업종→96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③ 경제자유구역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①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가 필요 - 경자법 제3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토록 개정하고 제 17조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뿐만아니라 국내기업에도 동일규정 적용토록 개정 [지식경제부 : 수용(협의추진)] - 수정법개정은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소관 사항 ②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소관 사항 ③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소관 사항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 6 : 부처협의 ○ '08. 12 : 경자법 개정		

①건의기관	경기도, 전라북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박 성준(055-320-5273)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선 연태(02-2110-46425)
⑤제목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①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협의가 지구지정 시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시 중복되고 각 개별법상 까다로운 협의절차 및 과도한 보완요구 - 중복되는 절차 및 협의자료 간소화 요구 ② 지구지정시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여 협의기간 장기간 소요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시 중복되는 내용은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 요구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① 농림부, 국토해양부 해당 사항(농지, 산지 등) ②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소관 사항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기도, 전라북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박 성준(055-320-5273)
③소관부처	산림청 산지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원수(042-481-4141)
⑤제목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농지전용 등 산전협의는 실시계획 승인시 필요한 사항과 차별화된 기준 재설정 또는 간소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산지전용 협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모두 위임 * 현재 200ha 이상(보전산지 50ha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권한은 산림청장 권한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제29회 국무회의 개정안 상정('08.7.16)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08.7.24)		

①건의기관	경기도, 전라북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박 성준(055-320-5273)
③소관부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형 철(02-2110-7617)
⑤제목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지나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을 요구하여 장기간 소요 ○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한 공원·녹지비율 요구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추후 환경관련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시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작성 및 협의기간은 개발예정지역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달라짐 ※ 부산 두동·마천지구의 경우, 폐쇄형 분지 지형으로서 인근 마천산업단지 (약 500m 이격)내 주물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에 따른 영향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부동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05.10월, '07.5월) ○ 공원·녹지 비율은 지구별 여건 및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률적으로 25% 이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님 - 공원·녹지는 지형, 녹지축, 동·식물서식처, 물순환체계, 자연경관 등의 관점에서 보전·복원 필요에 따라 20~30%이상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 -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주거·산업·유통·교육 등의 기능이 혼합된 복합개발 성격을 지니므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종합적 고려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 규칙 5조에 따르면, 각 개발계획별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정주환경 등을 고려한 최소 기준에 불과함(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기준은 없음) ○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입지·규모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토대로 환경측면의 입지타당성 및 보전대책 검토 필요(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취지) - 환경영향평가시는 사업시행 및 운영시의 환경영향을 중점 검토하므로, 전체적인 개발 물량에 대한 조정에는 한계가 있음 ○ 환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입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과 공원·녹지 확보를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함 -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시에 고려할 사항(오폐수처리계획, 절·성토계획 등)은 별도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인천청, 부산청, 광양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 행5급 최 강훈(061-760-5120)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선 연 태(02-2110-4642)
⑤제목	2-4.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개발계획에 의거 수립한 실시계획을 또다시 위원회 심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효율성 저해 -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타 개발사업과 같이 시·도지사로 위임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지방사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후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도 지사에 위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08. 6 : 부처협의 ○'08.12 : 경자법 개정		

①건의기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박 성준(055-320-5273)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권 기성(02-2110-5359)
⑤제목	2-5.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간소화 및 입주요건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동 과제들은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임 - 외투자지역 입주요건 완화, 지정기준 확대, 지역전략산업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동 과제들은 5월 중순경 발표 예정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 수립시 검토 대상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개요 및 추진일정> ○ 입지·노사 등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및 교육·의료·주거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불편사안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계획 마련·추진 ○ 인수위 선정과제, 외국인투자가 제기사항, 시·도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의 부처별 검토·조정(5월초까지) ○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최종계획안 마련(5월 중순경) -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대통령 주재) 보고(5월 20일경)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3개년계획 수립사항을 포함한 '08 외투촉진시책 의결(외투위원회 3.31) ○ 1차 발굴과제 검토를 위한 작업팀 회의(관계부처) 개최(4.11) ○ 2차 발굴과제(지자체 건의사항 중심) 관계부처 검토 중(4.15~)		

①건의기관	경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행5급 김 범수(032-453-7111)
③소관부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총괄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홍 국(02-2110-4636)
⑤제목	2-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① 공장 신설 없는 제조업까지도 조세감면혜택 부여 ② 취득세·등록세·재산세·법인세 등 조세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류를 금융·기타서비스업까지 확대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⑧부처의견	① 외투자금 적정 사용에 대한 사전 조사 필요 ☞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동 사항은 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동 사항 수용시 외투자금의 타 용도로의 유용 가능성 여부 및 공장 신설없는 제조업의 외자유치 형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금융서비스업은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으로 조세감면대상 업종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OECD 권고사항에 따라 구)재정경제부에서 불수용했던 사항임 ※ 금융서비스업,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에 tax break를 주는 것은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Guideline에 저촉될 우려 ○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구체적 적시 및 근거 필요 ※ 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광업·물류업 등은 조세감면대상에 포함되나 금융업은 제외되어 있음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행5급 김 범수(032-453-7111)
③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조세특례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조세특례제도과 김정주(02-2150-4333)
⑤제목	2-6.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를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및 금융·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 * 공장신설 없는 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 부여 건의는 제조업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에 대해 세제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취지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국제기준에 위배 - OECD는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제재작업을 진행 중 - 금융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에 해당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란 다국적 기업그룹 소속 자회사를 위하여 광고, 회계, 법률자문, 통계업무, 정보제공, 연구개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경영관리기능을 하는 지역 거점으로 이에 대한 조세감면도 위와 같은 유해한 조세감면제도로 판정됨 ○ 이에 대한 조세지원 추진시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 및 조세조약의 파기, 공동세무조사, 해외납부세액공제 불허 등 공동제재 조치 초래 가능성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참고 1> 유해성있는 조세감면 판단

- 조세감면제도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려면 ① + ②③④ 중 하나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 ① 비과세하거나 낮은 유효세율 적용
-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조세혜택 적용(ring fencing)
- ③ 제도운영상의 투명성 결여
- ④ 과세정보 교환 거부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금융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만 조세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 ①+②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해조세제도에 해당

- 조세감면 결과 비과세 되거나 낮은 유효세율이 적용 → ① 요건 충족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세제지원 허용 → ② 요건 충족

* OECD는 20개국의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유해하다고 판정하여 기폐지 또는 수정

<참고 2> 유해성 있는 조세감면 제도로 판정시 공동제재조치

□ OECD는 현재 각국에서 활용가능한 제재수단을 발굴·수집하여 발표 ('04년 경과보고서)

-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거래 또는 유해조세제도를 이용한 거래와 관련한 소득공제, 감면, 세액공제 등을 부인
- 유해조세보유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허위보고나 보고 기피시 가산세 부과
- 과소자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
- 유해조세보유국가 원천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을 허용하지않고 유해조세정책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경감 배제
- 유해조세보유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
- 유해조세보유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종료하고 신규로 조세조약 체결 거부

□ 이상의 사용가능한 각국의 제재조치에 기반하여 공동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 작동

- 1단계 : 유해조세보유국가의 유해감면제도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원국은 공동제제조치의 발동을 제안
- 2단계 : OECD 회원국들은 당해 사안에 대한 합동 회의를 통하여 활용가능한 현행 제재조치들 중에 어떠한 조치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공동제제조치 발동

①건의기관	경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행5급 김 범수(032-453-7111)
③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은경(02-2100-3924)
⑤제목	2-7. 경제자유구역 국내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 도입의 취지를 감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부과하는 지방세 중과 제도를 경제자유구역에는 배제 ○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제도 폐지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배제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폐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중점과제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자치단체 여건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 허가제에 대하여는 - 선심성 감면 등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을 병행하여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종합 개선방향 검토(4월중) ○ 자치단체 의견 수렴(5월중) ○ 지방세법 개정 추진 ('08 정기국회)		

①건의기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5급 최 강훈(061-760-5120)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안 상준(02-2110-5307)
⑤제목	2-8.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허가 관리권 일원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건축허가권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목표와 경관관리계획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자유무역지역의 건축허가권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 자유무역지역 내 건축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할 경우, 입주 허가 등은 관리권자에게, 건축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등 오히려 입주기업체에게 2개 기관을 상대하는 불편 초래 - 자유무역지역에서 주어지는 One-Stop서비스 혜택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배제하는 것도 문제 *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에 입주허가와 동시에 공장신설 승인을 의제해 주는 등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One-Stop서비스 제공(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 등)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일원화와 입주기업체의 불편 초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요자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편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인천청, 부산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기도 교육협력과 최 효정(031-249-2112)
③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예 해란(02-2100-6924)
⑤제목	2-9.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외국 영리법인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자격 완화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 ○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비영리법인 외국교육기관에 한하여 유치 추진 ○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 허용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개정안 마련('08.5~6)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개정 추진('08.6~)		

①건의기관	전라북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행5급 김 범수(032-453-7111)
③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윤 승 노(02-2100-3776)
⑤제목	2-10.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권 폐지(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 통일적 기준이 아닌 개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연봉책정 필요성 있음 ○ 시·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개정시 반영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계획 수립(4월) ○ 시·도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6월) ○ 법제처 심사(8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8월) ○ 시행 : 9월 한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박 용파(02-731-6156)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권 기성(02-2110-5359)
⑤제목	2-11. 외국인기업 설립 관련 규정의 명확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동 과제들은 「외축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임 - 외투자지역 입주요건 완화, 지정기준 확대, 지역전략산업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동 과제들은 5월 중순경 발표 예정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 수립시 검토 대상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개요 및 추진일정> ○ 입지·노사 등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및 교육·의료·주거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불편사안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계획 마련·추진 ○ 인수위 선정과제, 외국인투자가 제기사항, 시·도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의 부처별 검토·조정(5월초까지) ○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최종계획안 마련(5월 중순경) -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대통령 주재) 보고(5월 20일경)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3개년계획 수립사항을 포함한 '08 외투자진척시책 의결(외투위원회, 3.31) ○ 1차 발굴과제 검토를 위한 작업팀 회의(관계부처) 개최(4.11) ○ 2차 발굴과제(지자체 건의사항 중심) 관계부처 검토 중(4.15~)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박 용파(02-731-6156)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권 기성(02-2110-5359)
⑤제목	2-12.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 확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동 과제들은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임 - 외투자지역 입주요건 완화, 지정기준 확대, 지역전략산업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동 과제들은 5월 중순경 발표 예정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 수립시 검토 대상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개요 및 추진일정> ○ 입지·노사 등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및 교육·의료·주거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불편사안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계획 마련·추진 ○ 인수위 선정과제, 외국인투자가 제기사항, 시·도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의 부처별 검토·조정(5월초까지) ○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최종계획안 마련(5월 중순경) -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대통령 주재) 보고(5월 20일경)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3개년계획 수립사항을 포함한 ‘08 외투촉진시책 의결(외투위원회 3.31) ○ 1차 발굴과제 검토를 위한 작업팀 회의(관계부처) 개최(4.11) ○ 2차 발굴과제(지자체 건의사항 중심) 관계부처 검토 중(4.15~)		

①건의기관	전라남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광양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 농7급 조 자옥(061-760-5182)
③소관부처	산림청 산지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원수(042-481-4141)
⑤제목	2-13. 경제자유구역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감면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인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면 - 보전산지 100%, 준보전산지 100%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50%를 감면하고 또한 개별법에 감면조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감면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타 산업단지 및 택지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 곤란함 *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는 개별사업의 감면률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교육목적 시설(100%)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10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10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설하는 공장(10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특회계의 중요한 재원으로 산림사업 및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감면은 신중한 검토 필요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5급 노 점홍(063-280-20866)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권 기성(02-2110-5359)
⑤제목	2-14. 외투기업 지역 전략산업 투자 지원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동 과제들은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임 - 외투지역 입주요건 완화, 지정기준 확대, 지역전략산업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동 과제들은 5월 중순경 발표 예정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 수립시 검토 대상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개요 및 추진일정> ○ 입지·노사 등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및 교육·의료·주거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불편사안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계획 마련·추진 ○ 인수위 선정과제, 외국인투자가 제기사항, 시·도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의 부처별 검토·조정(5월초까지) ○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최종계획안 마련(5월 중순경) -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대통령 주재) 보고(5월 20일경)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3개년계획 수립사항을 포함한 '08 외투촉진시책 의결(외투위원회 3.31) ○ 1차 발굴과제 검토를 위한 작업팀 회의(관계부처) 개최(4.11) ○ 2차 발굴과제(지자체 건의사항 중심) 관계부처 검토 중(4.15~)		

①건의기관	경상남도 기업규제완화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재원(055-211-3413)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권 기성(02-2110-5359)
⑤제목	2-15.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활성화 위한 외투기업 지원요건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동 과제들은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임 - 외투지역 입주요건 완화, 지정기준 확대, 지역전략산업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등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동 과제들은 5월 중순경 발표 예정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 수립시 검토 대상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개요 및 추진일정> ○ 입지·노사 등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및 교육·의료·주거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불편사안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 계획 마련·추진 ○ 인수위 선정과제, 외국인투자가 제기사항, 시·도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의 부처별 검토·조정(5월초까지) ○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최종계획안 마련(5월 중순경) -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대통령 주재) 보고(5월 20일경)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3개년계획 수립사항을 포함한 '08 외투촉진시책 의결(외투위원회 3.31) ○ 1차 발굴과제 검토를 위한 작업팀 회의(관계부처) 개최(4.11) ○ 2차 발굴과제(지자체 건의사항 중심) 관계부처 검토 중(4.15~)		

①건의기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행5급 김 범수(032-453-7111)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교육의료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민 홍기(02-2110-4629)
⑤제목	2-1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외국병원 설립을 정부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경자법 개정 ○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50%이상에서 30%로 하향 조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병원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초 경자법 제정의 목적 및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한 것은, 최소한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담보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규모를 늘려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시키고자 하는 목적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건(051-888-38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광재(02-2110-8277)	
⑤제목	2-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장업무중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1차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토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개 정을 건의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신속한 수용재결로 수용재결 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공익 사업을 도모 하고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 ○ 다만, 당해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에 따른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보완대책 마련 (시·도 의견수렴후 조치)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법률개정추진('09년 상반기)			

3. 토지이용 개선

여 백

①건의기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최 종수(042-600-3880)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양 장 현(02-2110-6193)
⑤제목	3-1.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 위임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특별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시책 및 투자 유치곤란 -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특별시·광역시장에게 위임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폐지 - 특별시·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관계기관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관계기관 협의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여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도록 함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개정안 마련 : '08. 4월 - 입법 예고 : '08.4.28 - 제27회 국무회의 개정안 상정('08.7.1)		

①건의기관	충청남도, 경상남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김 용성(042-220-3023)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오 수만(02-2110-5304)
⑤제목	3-2.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기준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획면적, 업종별 배치계획, 공장부지 분할 및 사도개설 등의 세부 운용기준완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은(산집법§39조의2)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6.9월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을 개정하여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보완한 사항 * 분할 후 면적이 너무 과소할 경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교통, 주차) 부족, 단지 기능저하 및 슬럼화 문제 등이 야기 ** 분할면적 규모는 단지(총 655개) 사정에 맞게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산집법 제33조제3항)토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의견 반영 ○ 분할 후 합병하는 경우 최소분할면적 미만으로 분할가능토록 요청한 건의사항은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조치* *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제2008-19. '08.4.11)로 변경 - 향후 최소분할면적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는 관리기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됨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기도 경쟁력강화담당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5급 한 연희(031-249-4140)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상인(02-2110-6192)
⑤제목	3-3. 용도지역 변경 전 설립된 기존공장 규제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용도지역 변경전 기 설립된 공장까지 증설을 규제하여 설립 당시의 건폐율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받고 투자한 기업들의 피해 가중 - 경쟁력 강화 및 제품수요 증가로 생산라인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증설이 불가능하여 기업투자 활동 위축 ○ 용도지역 변경전 관리지역에서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설립당시 건폐율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내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확산 방지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 - 따라서,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어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 및 개발행위허가규모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으나, -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등록공장에 한해 자연녹지지역의 지정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완화 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8.6.5) ○ 제27회 국무회의 개정안 상정('08.7.1)		

①건의기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최 종수(042-600-3880)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허 경민(02-2110-8210)
⑤제목	3-4.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위임시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 상존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중앙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2~3개월에 불과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는 추진 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강원도 지식산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공업7 김 기호(033-249-3352)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추 원철(02-2110-4665)
⑤제목	3-5. 강릉광역권 R&D특구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개발 특구 지정요건 완화 - 지정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산업화 및 연구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연구개발특구 지정 취지는 특구법 제1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적된 R&D 기능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산학연 네트워킹을 촉진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임 (목 적) 지역 산학연의 연구개발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및 R&D성과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에 기여 (특구법 제1조) ○ 산업화 및 연구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대전광역시 산업용지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조 진구(042-600-381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허 경민(02-2110-8210)
⑤제목	3-6. 국가산단지구내 용도지역 변경 및 높이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의 조정가능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가능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 완화 - 용도지역 : 1종 일반주거·공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높이 :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므로 용도지역 문제는 미발생 ○ 건축물 높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층)도 부여도 가능 - 서민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전체 주택 중 임대비율은 50% 확보 전제 - 다만, 공동주택 전체를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은 곤란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강원도 청정에너지정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6급 전 광표(033-249-3216)
③소관부처	산림청 산지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원수(042-481-4141)
⑤제목	3-7.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산지전용 면적제한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개정 - 진입도로는 산지전용 허가면적 제한(3만㎡)에서 제외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소규모 무계획적 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계획 산지이용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면적의 상한을 두고 있음. 다만, 지형여건, 사업성격, 제도의 도입취지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다양하게 인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도시계획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되고 있으며,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함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8.7.16)		

①건의기관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5급 노 점홍(063-280-2086)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효정(02-2110-6180)
⑤제목	3-8.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단의 경우 15%이상,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의 경우 30%이상인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 불가 - 미분양율 기준제한으로 산업단지 신규지정 계획 수립시 수요에 따른 중장기 공급계획에 차질 발생 ○ 산업단지 지정 제한(미분양율)을 완화 건의 - 지방산단 30%(국가산단 15%) ⇒ 지방산단+국가산단 30%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이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지정제한을 유지 ○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지정목적과 평균규모(국가 740만평, 일반 34만평) 차이가 커서 미분양율을 통합하여 산정함은 불합리하며, - '07.12월 기준 일반산단 미분양율이 1.7%(건의자 전남 4.4%)에 불과하여 산단지정을 제한하는 미분양율 30%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년중 법개정 추진		

①건의기관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5급·노 점홍(063-280-2086)
③소관부처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행4급 윤 순호(042-481-4941)
⑤제목	3-9. 매장 문화재 조사 대상 범위 조정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면적 조정(3만㎡ → 5만㎡) ○ 발굴결과 보존되는 중요유적지 보상규정 마련 ○ 일정규모 이상 발굴비용은 사업자부담 (국가부담 확대) ○ 국가차원의 대규모 전문 조사기관 설립 및 조사인력 양성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지표조사 의무면적 조정 (3만㎡ → 5만㎡) : 장기검토 -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 구축('11→'09) 이후 현행 지표조사제도에 대한 보완 방법을 마련할 계획임 ○ 발굴결과 보존되는 중요유적지 보상규정 마련 : 수용 (협의필요) - 유적보존에 따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 보존유적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한 토지매입 근거를 마련,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동 사항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반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계부처(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필요함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 일정규모 이상 발굴비용은 사업자부담 (국가부담 확대) : 수용불가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공공의 자산인 문화재가 개발로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훼손에 따른 사업시행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다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 의지를 확산하고자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원인자 부담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도의 지원이어야 하므로 발굴비용의 국가부담 확대는 수용하기 어려움 ○ 국가차원의 대규모 조사기관 설립 및 조사인력 양성 : 기 수용 - 지난 '07년도부터 공공사업을 전담할 발굴조사단 운영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에 의한 조사단 구성·운영보다는 민간의 조사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청 산하 법정법인)에 동 성격의 조사단을 설치·운영토록 확정('07)·추진 중에 있음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보존유적 보상 근거 관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08.5. 입법예고('08.5.16) / '08.6. 규제심사 /'08.7. 법제심사 /'08.8. 차관회의·국무회의 / '08. 9. 국회 제출			

①건의기관	경상남도 기업규제완화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재원(055-211-3413)
③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윤 기(02-500-1723)
⑤제목	3-10.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건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3만m²까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지구·단지 등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협의를 농림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지구·단지 등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농림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해제 가능(시행령 개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산업단지 지정시 협의된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 제도 폐지 ○ 농지법 시행령 개정('08.6.5)		

①건의기관	강원도 농어업정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농6급 남 상대(033-249-2615)
③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윤 기(02-500-1723)
⑤제목	3-11. 도시관리계획 협의 권한위임 확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협의 권한 위임 확대 - 경지정리 시행 진흥지역: 1만㎡미만 → 5만㎡미만 - 경지정리 미시행 진흥지역: 1만㎡미만 → 10만㎡미만 - 진흥지역밖 : 20만㎡미만 → 30만㎡미만 * 도시관리계획 협의기간 축소로 사업 소요기간 단축 및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민간기업유치 활성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식량의 안정적 공급 문제는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협의권한의 대폭 확대는 곤란 - 다만, 산업단지 지정시 협의된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시·도에 기 위임되어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제도 폐지 추진중(시행령개정) - 또한, 개발용도로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 모두 위임 추진중(시행령 개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산업단지 지정시 협의된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제도 폐지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권한 시도지사에 모두 위임 ○ 농지법 시행령 개정('08.6.5)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산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이 민용(053-950-6264)
③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윤 기(02-500-1723)
⑤제목	3-12.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10ha미만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 지정이전 인·허가된 시설물에 대하여 용도제한, 행위제한 완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지구·단지 등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협의시 농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지구·단지 등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해제 가능(시행령 개정) ○ 농업진흥지역 지정이전 인·허가된 대지, 공장용지는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 정정 가능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지구·단지 등 지정시 협의된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제도 폐지 - 시행령 개정안 상정('08.05.27, 국무회의 의결) ○ 농지법 시행령 개정('08.6.5)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사회복지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종순(053-950-6211)
③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영민(02-2023-8165)
⑤제목	3-13. 묘지설치 거리제한 기준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사설묘지설치 거리제한규정을 축소·완화(도로하천 등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 30미터) ○ 거리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청장이 재량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문화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 토지나 지형의 상황 고려 등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화장 문화의 확산을 위해 앞으로 묘지의 확산은 가급적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무분별한 묘지의 설치 및 방치분묘의 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이 심각하여 장사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벗어남 - 최근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장사문화가 바뀌는 시점에서 거리제한 규정의 완화는 정부의 화장장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이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 시·군·구청장 재량권에 관한 사항은 묘지신고 또는 허가 지역의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산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이 재웅(053-950-6311)
③소관부처	산림청 산지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원수(042-481-4141)
⑤제목	3-14.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연접개발 제한 규정은 대도시 인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서, 농촌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농촌지역의 예외규정 신설) ○ 지역발전을 위한 공장설립 등에 대해서는 입목축적 규정(ha당 150% 이상지역은 불허가)을 완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연접적용 제외 등 연접규제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08. 6. 30까지 완료 예정)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자기 소유 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연접개발 예외 적용 - 연접개발제한 거리 축소(500미터 → 250미터) ○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은 산림이 우수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이므로 그 변경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음('08.4.17)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법제처 심사요청('08.5.28)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8.7.16)		

①건의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이 재복(031-345-2275)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소 성환(02-2110-6192)
⑤제목	3-15.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건의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아파트형 공장 또는 소규모 공장들이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증설을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첨단업종에 한하여 건폐율(20% → 40%이하), 용적률(100% → 200%이하) 완화 적용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건폐율 및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첨단업종 등 특정업종에 대하여만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용도지역제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 ○ 다만,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등록공장에 한해 자연녹지지역의 지정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8.6.5) ○ 제27회 국무회의 개정안 상정('08.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08.9)		

①건의기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 건(051-888-38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광 재(02-2110-8277)
⑤제목	3-16.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권한을 현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을 중토위에서 관장함에 따라 재결기간 장기화로 공익사업 추진지연 및 행정력 낭비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신속한 수용재결로 수용재결 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공익사업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당해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에 따른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보완대책 마련(시·도 의견수렴 후 조치)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법률개정추진('09년 상반기)		

①건의기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 건(051-888-38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광 재(02-2110-8277)
⑤제목	3-1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위원 수 조정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원장1인을 포함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개최시 위원 개인사정등으로 출석치 못할 경우 회의무산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됨 ○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재결을 위해 현행 위원 9인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토지보상법 제53조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 위원장1인 포함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토지보상법 제52조) ○ 지토위의 경우 9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 불참등으로 재결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불참 등으로 인한 재결업무 지장이 지토위의 보편적, 전국적 현상인지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검토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법률개정추진('09년 상반기)		

①건의기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 건(051-888-38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광 재(02-2110-8277)
⑤제목	3-18.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 삭제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2인) 및 토지소유자 추천(1인)가능 ○ 토지소유자 추천제도가 과도한 수주경쟁, 평가액을 법 한도 (110%)근접 평가하는 등 과다평가 원인이 되고 있어, 토지소유자 추천제도 폐지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토지소유자 추천제도의 부작용을 보완(사업시행자추천제도 포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개선 ○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제3의 기관 (토지수용위원회·감정평가협회등)에서 추천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 도출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법률개정추진('09년 상반기)		

①건의기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 건(051-888-38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광 재(02-2110-8277)
⑤제목	3-19. 보상액의 가격시점 조정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보상가격시점이 일원화(협의보상은 협의당시, 수용재결은 재결당시 가격)로 협의시와 수용재결 시까지 수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어 개발예정지의 실제거래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보상가격이 동시 상승되어 사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 보상가격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일원화(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은 예외적(법률적 근거)으로 인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요건으로 하고있음 ○ '정당한 보상'이란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보상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함(헌재 '90.6.25 선고 89헌마107) ○ 따라서 현재가격이 아닌 일정시점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시가 보상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사유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음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 건(051-888-38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광 재(02-2110-8277)
⑤제목	3-20.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적용 일원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인정이 개별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이 개별법에 따라 계획 초기가 아닌 상당히 추진된 단계에서 인정됨에 따라 시기의 차이로 인한 동기간의 지가상승이 반영되어 계획보상액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법의 사업인정고시를 계획의 초기단계(구역지정 등)로 일원화 하는 방안으로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 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 각 개별법에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익사업마다 절차 및 단계가 상이하므로 그 공익사업의 특성·절차및 단계를 무시하고 일률적 으로 사업인정 시점을 일원화하는 것은 입법기술 및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수용곤란 사업인정(예) : 택지개발사업 ⇒ 지구지정, 도로사업 ⇒ 도로구역결정고시, 하천사업 ⇒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충청북도 산림녹지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배 면수 043-220-3994
③소관부처	산림청 자원육성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박동희 042-481-4181/ pdh1225@forest.go.kr
⑤제목	3-21. 산지전용시 대체지정제도 폐지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산지전용(임업진흥권역 해제)시 다른 지역의 동일 면적을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 - 다만, 군사·국방시설용, 공용·공공용, 농림어업용 등에 한해서만 대체지정 없이 임업진흥권역을 해제 가능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08. 3월) <건의 주요 내용> ○ 산지전용시 대체지정제도 폐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 및 임업진흥권역관리요령(산림청 예규 제536호) 제5조 3항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3 법 초안 마련, '08.3 관계부처 협의, '08.4 입법예고, '08.4 규제심사, '08.6 법제처 심사, '08.8 국회제출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성수 (054-270-3475)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안진애(02-2110-8198) jinae@mltm.go.kr
⑤제목	3-22.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부담률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5 제2항>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거나 구역안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 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건의 주요 내용> ○ 1안 (평균부담률 상향 조정)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2안 (단서조항 신설) ⇒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균 토지부담률을 55퍼센트 이내에서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⑦관련 규제내용	-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환지계획에 있어서의 토지부담률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 현행규정상 토지부담률은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60%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토지부담률 등을 포함한 환지계획은, 당해 사업의 지정권자에게 이를 인가받아야 하므로, 동 건의사항은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60% 범위내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처리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⑨해외사례	-		
⑩추진일정	-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허가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류명재, 054-979-6201
③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운기 사무관(02-500-1723, kimuk@mifaff.go.kr)
⑤제목	3-23. 농업보호구역내 공장 업종변경 규제 완화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농지법 제32조에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규정 <건의 주요 내용> ○ 농업보호구역내 공장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농지법 시행(1996.1.1)이전 농업보호구역에 설치된 공장의 경우 환경법상 공해 배출시설이 없는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기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이에따라 농업 보호구역내에서 설치가능한 시설 및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여 적용하게 되나 ○ 현행 제도상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⑨해외사례	-		
⑩추진일정	-		

①건의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3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3과 류운기(032-440-4462)																									
③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송명현(02-2150-4215)																									
⑤제목	3-24.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조정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10~20% 감면 <건의 주요 내용> ○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50%로 확대																											
⑦관련 규제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⑧부처의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수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 일부수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 중장기검토</td> <td style="text-align: center;">☒ 수용곤란</td> </tr> </table> ☐ 수용 보상가의 현실화 수준을 감안할 때 추가감면 허용시 근로·사업 등 타소득과의 과세 불형평 심화 ○ '07년 양도세 실거래가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수용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20% 감면하는 제도를 기 신설 ※ 수용시 양도세 감면 연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89이전</th> <th>'90~'93</th> <th>'94~'98</th> <th>'99~'01</th> <th>'02~'06</th> <th>'07이후'</th> </tr> </thead> <tbody> <tr> <td>현금보상분</td> <td>100%</td> <td>50%</td> <td>30%</td> <td>25%</td> <td>-</td> <td>10%</td> </tr> <tr> <td>채권보상분</td> <td>100%</td> <td>80%</td> <td>40%</td> <td>35%</td> <td>10%</td> <td>15~20%</td> </tr> </tbody> </table> *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환금성 제약, 매각시 할인 등을 감안하여 감면 우대 ☐ 현지인의 세부담은 적으며 감면 확대시 부채지주에게 혜택 귀속 ○ 현지인(약 70%)의 경우 각종 비과세·감면*이 적용되어 대부분 비과세되거나 과세되더라도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 * 8년이상 자경농지·농지대토시 양도세 100% 감면(5년간 세액 1억원 한도),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최대30%, 주택:최대80%),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 감면 확대시 부채지주·고액 보상자*·다주택자등에게 대부분의 혜택 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농지 감면한도 1억원 상당 양도가액은 약 6억원 ⇒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중 1억원 이하 감면 대상자 비율은 95%(07년 기준)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89이전	'90~'93	'94~'98	'99~'01	'02~'06	'07이후'	현금보상분	100%	50%	30%	25%	-	10%	채권보상분	100%	80%	40%	35%	10%	15~20%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89이전	'90~'93	'94~'98	'99~'01	'02~'06	'07이후'																						
현금보상분	100%	50%	30%	25%	-	10%																						
채권보상분	100%	80%	40%	35%	10%	15~20%																						
⑨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⑩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①건의기관	인천광역시(기업지원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이명숙 (032-440-2873, 010-6799-9398)
③소관부처	행정안전부(회계공기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연중 (02-2100-3906, 017-220-1932)
⑤제목	3-25. 공장 점유 공유재산 매각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무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규제완화 특별법”), 제12조에는 공장 진입로 설치 시 사도개설 허가 의무화 ○ 공장부지의 경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대부, 매각 추진에 어려움 - 강제규정이 없어 진입로 등 확보 애로 <건의 주요 내용> ○ 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토지) 전수조사 후 중소기업에게 대부중인 토지는 중소기업에 매각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매각 등 신속처리 - 관리계획 반영 제외,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에 매각 등		
⑦관련 규제내용	없음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 전수조사 후 대부중인 토지 매각 - 수용곤란 - <u>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매각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곤란</u> ○ 공장 진입로 매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 수용곤란 -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익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u>계획서</u>”로 일정규모(토지 1건당 1천㎡, 5억원 이상 등) 이상 <u>중요 재산만</u> 대상인 바, <u>관리계획 자체를 배제토록 하는 것은 곤란</u> - <u>공장부지의 경우 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6호)</u> ※ 예산심사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 <u>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한 것은 규제라 볼 수 없음</u> ○ 수의계약으로 매각조치 - 수용곤란 - <u>토지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u>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관련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8.4.18>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18>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이하 생략)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第12條 (私道開設許可에 관한 特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工場進入路를 造成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도로법」 제7조의 規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大統領令이 定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私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로 보아 私道開設을 許可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第14條 (國有財産등의 처분에 관한 特例)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管理廳 또는 地方財政法 第73條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의 管理廳은 中小企業者가 廢道 기타 이와 유사한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부득

이하에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는 國有財産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管理計劃 또는 地方財政法 第77條第1項(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管理計劃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産의 管理廳 또는 公有財産의 管理廳은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の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부득이하게 工場用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中小企業者에게 隨意契約에 의하여 이를 賣却할 수 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4.8, 1999.5.14, 2005.7.27, 2008.2.29>

1. 공장용지로부터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연결가능한 거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길까지의 연결 가능한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이에 하천·구거·제방·유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용지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9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 그 밖에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50이하인 때를 말한다. <개정 2005.7.27>

[전문개정 1998.2.12]

①건의기관	인천광역시 기업지원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이 명숙(032-440-2873, 010-6799-939)
③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박 필성(2150-5161, 016-606-7586, pps123@mosf.go.kr)
⑤제목	3-25. 공장 점유 국유재산 매각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건의 주요 내용> ○ 국유지를 공장용지(진입로 포함)로 대부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 -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절차 생략 및 수의계약 허용 * 건의기관 담당자는 법령의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 등의 실무자들의 보수적이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한 것임(7.24. 인천광역시 기업지원팀장 윤원식과 통화)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 우리 부의 추가조치는 불필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기 조치 완료 ○ 다만, 현행 법령상 공장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공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및 용도폐지 된 사실이 없는 재산(처분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처분에 관한 특례를 둘 필요 -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에게 매각 가능 -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은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검토할 사항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①건의기관	울산광역시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울산광역시 투지지원단 신호철(052-229-2791, 016-848-481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도시환경과 허경민 (2110-8210, 010-7696-7399)
⑤제목	3-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개발제한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가용토지 절대부족 ○ 조정가능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중앙에 있어 해제절차에 장기간 소요 <건의 주요 내용> ○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를 산업단지로 조성 허용 ○ 조정가능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⑦관련 규제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개발제한구역은 환경평가 등을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인 해제절차를 진행 중으로 - 이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것은 제도자체 존립 위협 ※ 울산의 경우 '08년 이후에도 총 16.91km²의 조정가능지역(해제 예정지)을 산업용지로 전환 가능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해제권한 위임시 무분별한 개발 우려 - 해제권한 위임 없이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정책계획화됨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단축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에서 소요되는 기간 : 2~3개월		
⑨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⑩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①건의기관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산업진흥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산업진흥과 신호철 (052-229-2791, 016-848-481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도시환경과 최수관 (02-2110-8209, 019-291-6902)
⑤제목	3-27. G·B내 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 허용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공익시설로서 '자동차 천연가스공급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인 연료전지자동차의 실용화에 필수적인 '수소 자동차충전소'는 미포함 <건의 주요 내용> ○ G·B내 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 가능토록 법령 개정 - [별표1] 9. 자동차천연가스공급시설 →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⑦관련 규제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9. 공익시설>사. 가스공급시설>(가)자동차 천연가스공급시설로 제한하고 있음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구역관리원칙에 위배 ○ 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나, 주민생계형시설, 공공용시설 등 일부시설만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음 ○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경우 주유소나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처럼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입지를 허용하기 위한 법령개정은 타당성이 없으며, 향후 타당성이 검증되면 입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활용 ○ 개발제한구역은 2002년부터 20호 이상 집단취락은 1호당 1,000㎡규모로 해제작업을 추진중이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를 지자체별로 해제 중임 ○ 개발제한구역 취락은 대부분 해제되고 농지, 임야 등 존치하는 상태에서 '수소 자동차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입지 타당성이 없음 - 집단취락에 포함되어 해제된 도시 인접지역 입지가 최적 ○ 지난 36년간 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제약하는 상황에서 위험물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강력 반발			
⑨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⑩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①건의기관	경상남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상남도 기업규제완화팀 이상훈(055-211-3412)
③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양식산업과 김재철 서기관(02-500-2376)
⑤제목	3-28.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 및 행위제한 완화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남해안 지역에 광범위하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건폐율 40%, 용적률 8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규정(시행령 별표 26) <건의 주요 내용>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전면 재조정과 필요 지역만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존치 ○건폐율 용적률의 상향조정, 각종 행위 제한의 완화 등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⑧부처의견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7.28 시행예정)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의 규제 완화 - 관광지 등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확대(300㎡→660㎡), 관광지 등 숙박시설 바닥면적 확대(660㎡→1,000㎡)등 ○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간 여건변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04)를 토대로 21개 연안 시·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역부분 중 약 75%(941km²) 해제 추진중 ○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후 남은 구역(약 25%)은 동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면적이므로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 등은 수용 불가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규제완화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완화 - '08.6 규제심사, '08.7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완료/ 7.28일 공포예정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03~2004) -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지침 마련, 지자체 시달('06.10) -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을 반영한 도시관리 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		

①건의기관	경남 통영시 기업지원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통영시 기업지원과 차정순 (055-650-5223)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광물자원팀 주무관 권순범 (02-2110-5449)
⑤제목	3-29. 광업권 설정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애로		
⑥건의내용	<건의 주요 내용> ○ 광업권 설정 제한 강화 - 광업권이 설정되었으나 실제 광물을 채굴한 경우가 없는 경우 발생		
⑦관련 규제내용	해당 없음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광업권과 광산개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광산개발 단계에 따라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고, 토지 소유권 등 타 권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광업법 개정을 검토 중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개발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채굴권을 인정 * 탐사권은 채굴권 등록을 위한 사전조사·탐사단계의 예비적 권리 성격으로 조광권 및 저당권 설정을 배제 - 채굴의 제한규정을 현행 건축물의 지표·지하 30m이내에서 지표 50m, 지하 150m 이내로 강화 - 토지소유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농작물 경작, 건축 등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에 대하여 반출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업권 설정 지역 내에서의 분쟁을 방지		
⑨해외사례	일본, 독일 등은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관리		
⑩추진일정	- '08.8 광업법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08.9 입법예고, '08.10 법제처 심사, '08.12 국회제출		

①건의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산업육성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산업육성과 김영만(055-330-6802)
③소관부처	환경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형철 (02-2110-7617)
⑤제목	3-30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임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대체로 산지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수목만 베어내고 대규모 토목공사는 없음 <건의 주요 내용>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 -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에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개발행위이므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여 보급·촉진 필요				
⑦관련 규제내용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태양광발전시설은 대개 산지의 경사면에 입지하므로, 사업 시행에 앞서 생태·경관적인 측면에서 환경성검토 필요 - 산지 개발의 경우 지형, 생태·녹지축,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서식지,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다만, 환경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⑨해외사례	○ 주요 선진국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도입 현황 : 미국, 캐나다, EU,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산업육성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영만(055-330-6802)
③소관부처	산림청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산지제도과 김원수 사무관 (042-481-4141, own001@forest.go.kr)
⑤제목	3-30.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대부분 산지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수목만 제거하고 대규모 토목공사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 산지관리법에 따라 일반 개발행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처리함으로 인·허가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원활한 개발 및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건의 주요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이므로 각종 법령의 제한사항을 최소화하여 보급을 촉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기준 완화 - 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시 산지전용허가 의제사항 포함		
⑦관련규제내용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최근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산지이용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친환경적인 산지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태양광 사업 입지선정시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추진시는 산지관리법상의 각종 제한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데도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개별입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 수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입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동시에 검토·추진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하도록 「전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산지규제 완화를 위하여 산지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탄력적인 적용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태양광 발전을 빙자하여 소나무를 조경수로 채취하거나 산지를 타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엄격한 인·허가 관리와 함께 가급적 유휴토지 등 산지 이외의 공간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영만, 010-8829-7888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사무관 조영원(02-2110-5520)
⑤제목	3-30.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관련 절차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환경성검토, 산지전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을 얻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음 <건의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시 산지전용허가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허가시 의제처리 하도록 할 것		
⑦관련 규제내용	※ 건의내용이 다수의 규제와 관련될 경우, 각 규제를 구분하여 모두 기재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전기사업 허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일종의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와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하는 법률은 개발행위 관련 법률이나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위한 특별법” 등 ○ 아울러, 현재에도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행위 의제처리가 가능함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통상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합천군 경제통상과 유문형 (055-930-3352, 011-550-7507)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도시정책과 권순호 (2110-6191, ksh1302@mltm.go.kr)
⑤제목	3-31.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업종제한 완화		
⑥건의내용	<규제현황>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0] 제 1호 차 목에 명시된 폐수배출 관련 업종(숨 및 실 염색가공업 등 79개)이 아니어야 함 ○ 수질/대기보전법에서는 공해물질 및 배출시설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공해방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특정업종을 지정하여 포괄적으로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실체가동시 폐수 등 공해발생이 없는 공장까지 설립제한 - 솥공장(24113), 탈지면제조(24230), 전통죽염제조(24391) 등의 업종은 제조과정에서 실제 폐수배출이 없음에도 공장설립제한 <건의 주요 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의한 특정업종별 입지제한 폐지 - 동 업종에 대한 환경유해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시 환경 관련 법령에 반영		
⑦관련 규제내용	○ 계획관리지역내 입지가능한 공장의 종류를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및 업종 등에 따라 제한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공장의 제한업종 79개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솥공장(24113), 전통죽염제조업(24391)이 포함된 23개 업종을 허용업종으로 전환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입지를 용이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국토계획법시행령 입법예고('08.6.5~'08.6.24)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4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마련, '08.5 관계부처 협의, '08.6 입법예고, '08.8 규제심사, '08.9 법제처 심사,		

여 백

4. 환경규제 관련

①건의기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광주광역시 수질보전과 이 기출(062-613-4341)
③소관부처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배 철 호(02-2110-7642)
⑤제목	4-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규제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농지, 축사 등 불특정 지역의 오염물질(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저감기술 개발이 미흡한 점을 감안, 비점오염원을 수질오염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체 배출부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 ○ 다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삭감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비점배출부하량의 삭감을 용이하게 할 계획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광주광역시 수질보전과 이 기출(062-613-4341)
③소관부처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배 철 호(02-2110-7642)
⑤제목	4-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매5년) 수립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므로 시행계획(매년) 수립시에는 지방환경관서 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생략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시행계획 수립시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환경관서 장의 협의(승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 관계법령에 시행계획 협의(승인) 기한을 60일 이내로 법정화 하여 행정기간을 단축('08.12) ※ 법령 개정전까지 지방환경관서에 조속히 검토 승인하도록 지침 시달('08.4)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업무지침 시달('08.4) ○ 4대강 수계시행규칙 개정 추진 - 입법예고('08.7.1), - 법제처 심사('08.8-9), - 개정 공포('08.10)		

①건의기관	광주광역시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광주광역시 수질보전과 이 기출(062-613-4341)
③소관부처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배 철 호(02-2110-7642)
⑤제목	4-3.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산정방식 개선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지자체의 배출부하량 산정시 기준배출부하량의 10% 수준에서 안전율을 추가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 2010년까지 안전율 적용을 유예하고, 2단계 사업 추진시 1단계 부하량의 70%에 잔여할당량을 합계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개선 ※ 현행 1단계 부하량의 30% 범위 내에서만 2단계 부하량 협의 가능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총량관리 시행 중간연도에 목표수질을 달성한 경우 현재 안전율 10%를 수질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기본방침 개정('08.8) ○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1단계 부하량의 60%에 잔여할당량을 합계한 범위 내에서 협의토록 업무처리지침 개정('08.8월까지)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개정안 연계업무 처리지침 및 기본방침 개정안 마련('08.5) ○ 관계기관 의견수렴('08.6~7) ○ 지침 개정('08.7)		

①건의기관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박 설재(042-600-2237)
③소관부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경 미(02-2110-7722)
⑤제목	4-4. 연료사용지역 규제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고탄유 및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 ○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외에 연료의 사용까지 이중 규제하여 고유가 시대에 사용자의 연료선택권 제약으로 기업난 가중 우려 ⇒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연료사용에 관한 규제는 폐지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저탄유, 청정연료의 사용 의무화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환경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탄유 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등은 저탄유 외의 연료사용 허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고체연료 사용 허용(시행령 제42조제2항)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은 청정연료 외의 연료 사용 허용(시행령 제43조제3항)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5급 성 기소(043-220-2141)
③소관부처	환경부 대기관리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정 석철(02-2110-6793)
⑤제목	4-5. 대기기본부과금 부과 면제범위 확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자발적 배출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기본부과금 부과 -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대기 1~5종으로 구분, 4종사업장은 50% 경감, 대기 5종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면제 ○ 대기 4종 사업장은 사업장 수(전체 사업장의 약 70% 차지)에 비하여 부과금액이 미미하므로 기본부과금 면제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대기배출부과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중 - 용역 내용 : 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 및 오염물질 종류 재조정,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한 부과 면제 등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 추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연구사업 정책심의('08.2) ○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등('08.4) ○ 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08.5) ○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09. 6)		

①건의기관	부산광역시 청소관리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강 부열(051-888-3662)
③소관부처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박 광선(02-2110-6936)
⑤제목	4-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개선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설치·운영토록 하던 것을 해당 시·도의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의무를 면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처리책무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처리책무와 연계되는 문제로 수용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산업단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08.12)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09~)		

①건의기관	경기도 수질정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안 중현(031-8008-6941)
③소관부처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형섭(02-2110-6846)
⑤제목	4-7. 구리 관련 폐수배출기준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특정수질유해물질중 구리(Cu)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입지규제를 농도규제로 완화 ※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페놀 등 19종 ※ 농도규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공장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팔당호는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으로, 입지여건의 특수성(취수장이 강 중류에 위치)으로 인해 상류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원천적 입지제한 불가피 - 또한 대체수원의 부재로 오염사고에 취약하여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수적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최근 발생한 낙동강 페놀유출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취수 중단 사태 우려 ○ 구리는 급성 소화기계 장애, 만성적 간·신장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물질로서 세계적으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 ※ 미국, 캐나다도 일일 적정 섭취량을 2~3 mg에서 0.9 mg으로 강화('01년) ○ 경기도의 건의사항은 이천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 허용과 관련된 사안으로1개 공장 신증설을 위해 상수원보호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법률 개정은 불가 - 하이닉스의 요청으로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감안해 신증설이 아닌 기존공장에 한해 구리공정 전환을 이미 허용('08.4) - 또한, 농도규제로의 전환 관련 의원 발의법안(4건)도 모두 폐기('08.2)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환경6급 윤 용식(052-229-3131)
③소관부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신 동인(02-2110-7613)
⑤제목	4-8.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운영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사업계획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사업추진단계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사전 환경성 검토 행정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관련 협의권은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는 아직까지 이양되지 않음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관련 ○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도시관리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중임('08.4~5월 입법예고 예정) ②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운영 ○ 환경성평가제도가 별개의 법률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중복된 제도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도개선 중이며, 두 제도의 협의근거 법률을 '통합법'으로 단일화('09.3, 정부안 마련) ③ 산단조성 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한 시·도지사 위임 ○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규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으로 환경문제의 특성, 지자체 현실 등 고려 시, 위임 곤란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 먼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기관은 환경보전 전문기관인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함 - 둘째, 지자체 협의업무 수행 시, 개발주체 및 개발사업자의 이중부담 초래 · 각 개별법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규정 · 이에 따라 지자체가 협의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환경부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시 사전환경성검토에 준하는 협의의견을 당연히 제시 · 이 경우 개발주체의 이중 협의부담, 지자체 협의의견과 환경부 협의의견이 상충될 경우, 사업자 혼란 등의 문제점 초래 - 개발계획 수립·시행기관인 지자체의 협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배에 따른 지역난개발 발생 우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 협의할 경우 본래의 취지 상실 우려 · 지자체 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우선할 수 밖에 없어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 셋째, 사전환경성검토 시 고려해야 하는 환경문제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멸종위기종 분포 등 종합적인 판단과 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부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양상을 띠고 나타나고 있는 실정 ※ 김해 매리공단 공장설립 관련 김해 vs 부산간 분쟁 - 넷째,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환경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서간 협의업무로서 개발 위주 사업 추진으로 야기되는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보완수단임 · 개발성향의 지자체가 수행 또는 승인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부가 보전을 위한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개발과 보전간 견제와 균형 유지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08.5.9)			

①건의기관	강원도 탄광지역개발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공업8급 김 명호(033-249-2764)
③소관부처	소방방재청 평가관리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전 병훈(02-2100-5476)
⑤제목	4-9. 광산개발 인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채광계획 인가시 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도록 규정 ○ 노천채광이 아닌 갱내채광의 경우 광산개발 훼손 면적이 전체 광구 중 일부분에 불과하나, 미 훼손 부분을 포함한 광구 전체에 대한 재해영향을 검토하게 되므로 광업권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 초래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광구단위 면적이 아닌 실제 훼손 면적"을 기준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하도록 자치단체에 지침 시달 ※ 채광계획 변경시 개발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생략하도록 제도 개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08.2.22)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자치단체 공문 시달('08.4)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환경보호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조 관훈(054-950-6181)
③소관부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유역총량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국토환경정책과 김경호 (02-2110-7615) 유역총량제도과 정 성욱 (02-2110-7645)
⑤제목	4-10.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업무 이관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① 공장설립 등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단순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권한을 이관토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개정 ② 공장설립 시 시행계획상의 자연 증감(자연증가량)에 따른 잔여용량은 개발계획의 부하량(개발부하량)으로 조정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① 지속검토 : 공장은 지자체가 승인기관이면서 협의기관이 되어 개발과 보전의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보유, 개발 편향의 제도 운영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 개별공장의 추진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 소요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07년 공장 사전환경성검토 1,395건의 평균협의기간은 17.1일임 - 현재 민간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능의 지자체 이관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함이 타당 ② 수용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자연증감 할당부하량 감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용량을 개발계획 할당부하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가능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환경보호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조 관훈(054-950-6181)
③소관부처	환경부 환경산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강 중희(02-2110-6686)
⑤제목	4-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선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 당시에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3배 차이로 과세저항이 없었으나 현재는 경유와 휘발유 가격차이는 없는 실정이며, 시설물의 경우도 공장 주택은 제외되나 점포, 사무실은 부과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경유자동차 및 점포 및 사무실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과세의 형평성 유지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⑧부처의견	☐ 수용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대기환경개선 등 중·장기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 최근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작·출고 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이전에 제작된 차량보다 1/2 수준으로 저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 개선부담금을 3년간 50%를 경감토록 제도를 개선(2007년 12월 28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한 바 있음 ○ 공장은 생산·제조부문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전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식·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모든 국민에 공통 적용 되는 사항으로 형평성의 문제는 없음 ○ 다만, 자동차 부담금의 경우 최근 경유가의 급등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안정도 필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 전반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운영방향 검토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2009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체계 개편시 등)		

①건의기관	강원도 관광진흥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강원도 관광진흥과 이창우 (033-249-3533)
③소관부처	환경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환경부 자연자원과 이동욱 (02-2110-6756)
⑤제목	4-12. 자연공원 내 궤도·삭도설치 제한규정 완화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자연보존지구내 2km·50인승 이내 삭도 허용 ○ 삭도설치검토·운영지침 - 자연녹지도 8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미만 등 생태계 문제가 없는 곳에 삭도 허용 <건의 주요 내용> ○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완화 요청		
⑦관련 규제내용	○ 자연공원법에 의한 궤도·삭도 설치 제한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삭도설치에 대한 찬반입장이 첨예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선필요 ○ 우리부는 현행 규정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말까지 합리적 대안 도출 노력		
⑨해외사례	○ 일본, 호주, 스위스 등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운영		
⑩추진일정	○ '08.6~'08.12 : 로프웨이 협의체 매월 운영 (현재 3회 운영) ○ '08.12 : 가이드라인 마련		

①건의기관	경북 포항시 환경위생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환경위생과 신정혁(054-270-3094)				
③소관부처	환경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환경부 대기정책과 박병열 (02-2110-6783)				
⑤제목	4-13. 배출사업장 신고제도 개선						
⑥건의내용	<현황 및 문제점> ○ 배출시설을 설치허가(변경), 신고(변경) 의제처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허가, 신고 등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허가, 신고 등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관련 환경법령 중 의제처리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신고하는 불편 및 행정적 낭비요소로 작용 <건의 주요 내용> ○ 배출시설 설치신고 내용 중 각종 환경법령에 중복되는 신고 사항은 일괄적으로 의제처리 - 대표자 변경, 사업자의 변경, 사업장 명칭변경, 상호변경 ※ 관련법령 ·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유독물영업자의 변경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0항(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제46조(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제17조제2항(사업장배출자의 변경신고)						
⑦관련 규제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관련 환경법령 중 의제처리						
⑧부처의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수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 일부수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 중장기검토</td> <td style="text-align: center;">□ 수용곤란</td> </tr> </table> ○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 신고의 의제처리」에 포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사항중 사업장 명칭의 변경신고, 사업자의 변경신고 의제 처리 추가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사항의 의제처리 추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에는 동법 제26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상호 변경 시에는 기존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검토 필요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8 : 입법 예고, '08.9~11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 '08.12 : 국회제출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환경위생과 신정혁(054-270-3094)	
③소관부처	환경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지영 (02-2110-6814)	
⑤제목	4-14.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지역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제외 - 제외지역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및 유사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건의 주요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을 제외대상에 포함 ※ 포항철강산업단지 3단지(3공단지역) : 배출시설 허가·신고지역			
⑦관련 규제내용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인수위 이관 공직자 정책제안에서 기검토한(인수위-0310) 사항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제도에 대하여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 신고제외지역의 단계적 확대 검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중장기입법계획에 따라 '09년 「소음·진동규제법」 하위법령 개정시 검토 추진 ※ 현재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안) 부처협의 추진 중			

①건의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경제도시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상남도 하동군 김영심 (055-880-2204)
③소관부처	환경부, 지식경제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형철 (02-2110-7617)
⑤제목	4-15.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간 조정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10일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30일 <건의 주요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기간 조정 및 개선			
⑦관련 규제내용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필요한 협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의 경우, 협의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따르도록 개정 필요 - 공장설립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20일을 적용(「환경정책기본법」상 협의기간 30일보다 완화적용) ※ 20일은 문서 수·발신, 전문가 자문, 현지조사, 관련부서 의견수렴, 의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임. ※ (입법사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7항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여 백

5. 수도권 · 기업규제 완화

여 백

①건의기관	경기도 지역정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장현(031-249-489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유리(02-2110-6175)
⑤제목	5-1. 수정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 및 토지이용 효율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기본적으로 수정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을 통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 낙후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우선 개선 ※ 공장총량제 폐지, 자연보전권역 조정, 대학규제완화, 지역발전특구·경제자유구역내 수정법 규제 배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규제 개선 등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단기적으로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선별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 ○ 향후 광역경제권 등 지방발전기반 조성과의 연계하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로 전환할 계획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08.12) ○ 실천계획에 따른 단계적 제도개선(09~)		

①건의기관	경기도 산업정책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방 대혁 (031-249-4607)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박 성우(02-2110-5303)
⑤제목	5-2.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산업단지에서 첨단업종(96개 업종) 국내 대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 외투기업 25개 업종 신·증설은 기한 제한없이 상시 허용 ○ 중복되고 규제효과가 적은 공장총량제 폐지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산업단지)에서는 14개 업종의 대기업 기존공장은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100%범위 이내 증설 가능 (산집법시행령 별표2) ⇒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외투기업의 경우는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25개 업종에 대하여 공장 신·증설을 '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중 ⇒ 신·증설 상시 허용방안은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관련 검토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공장 총량제는 국토해양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중으로 이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개선방향 검토 필요 *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방안” 용역 추진중('08년 상반기 완료 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전경련과 합동으로 수도권내 투자애로사항 조사 실시('08. 4~) ○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 검토 추진 ('08. 4~12)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조 인 환(02-2110-8159)
⑤제목	5-3. 과밀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축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시설에 대해서 과밀부담금 감면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되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첨단산업 관련 건축물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업무용·판매용 시설 용도로서 일정면적 이상(업무용 25천㎡, 판매용15천㎡)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과밀부담금을 부과 ○ 외국인투자기업 및 물류시설에 대한 추가 감면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할지 여부, 수도권 집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향후 현행 수도권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08.12) ○ 실천계획에 따른 단계적 제도개선('09~)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기업지원담당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효 정(02-2110-6180)
⑤제목	5-4.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 규제개선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울특별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의 개선 필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나, -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및 시기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 수정법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신설을 제한하므로, 서울시는 현 공업용지 총량 내에서 대체지정만 가능 (서울시 산업단지 2개소(2.1km²), 공업용지 8개소(25.6km²))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태복(02-2110-8156)
⑤제목	5-5. 수도권내 공공법인의 신·증축 금지규제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현행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내에서 공공청사의 신·증설을 금지 ○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 첨단과학 등을 지원하는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신축을 허용토록 개선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⑧부처의견	○ 수도권정비법상 공공청사 입지규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신·증축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시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청사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다만, 현행 수도권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시 공공청사 입지규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08.12) ○ 실천계획에 따른 단계적 제도개선('09~)		

①건의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획조정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7급 박 영수(053-667-2114)
③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강 호산(02-2156-9913)
⑤제목	5-6. 외부감사 대상 법인 적용기준 상향조정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비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회사 기준을 상향조정(현행 자산 70억원 이상→ 개선 150억원 이상)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현재 정부, 기업대표,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회계 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므로, 상향수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금융위 주관으로 회계제도선진화T/F 구성(1차회의 '08.4.17) ○ 외부감사기준 상향조정을 포함한 회계제도선진화 방안 검토 중 ○ T/F 구성 및 세부방안 마련('08.6) ○ 시행령 개정 추진('08.12)		

①건의기관	충남, 경남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김 용성(042-220-3023)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최 정민(02-2110-6190)	
⑤제목	5-7. 연접개발 제한 합리적 개선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연접지 개발제한제도로 인해 기존 가동 중인 기업체가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여도 연접규정에 제한을 받아 확장을 못하고 별도의 공장부지를 확보해야 함 ○ 실수요자들은 연접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목적의 연접개발 제한이 오히려 난개발을 유발 ※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폭의 도로·하천·공원 등으로 분리되고, 너비 8m 이상 진입로가 주간선도로 등에 의해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적용 예외를 인정 ⇒ 연접개발 적용 예외기준 완화 - 도로·하천·공원 등 기개설된 지형지물 분리 기준 : 20m→ 10m - 개발행위 대상 토지진입로 : 8m→ 6m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연접개발의 적용예외기준은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상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단서) ○ 또한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로의 기준을 현행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도로에만 직접 연결 되도록 한 규정을 “읍·면 지역에서의 농어촌도로”로 확장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08.9)			

①건의기관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성(042-220-3023)
③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영선(02-2023-7785)
⑤제목	5-8. 영업 폐업신고 연계처리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이중적 부담 ○ 민원인의 폐업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과다지출,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 혹은 세무서중 한 곳에만 신고함으로써 관할관청은 관리에, 관할 세무서는 세원관리에 부담 ○ 한곳에만 폐업신고 이후 업종 변경된 폐업신고 되지 아니한 관청은 이를 확인하여 영업소 폐쇄 혹은 폐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행정력 낭비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관청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국회제출(07.8.22), 국회 계류중) ○ 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시설6급 이 기동(052-229-2751)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효 정(02-2110-6180)
⑤제목	5-9. 개별공장 입지요건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국토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서 각각의 토지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입지제한*을 정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제약 ※ 상수원보호구역 및 농업용저수지에서 일정거리(광역 20km, 지방 10km, 저수지 5km)내 지역에서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제한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 동 지침은 「국토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보다 강화된 규제를 규정하고 있어 개별공장의 입지가 관련 법률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통합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하위지침이나, 관련내용은 환경규제이므로 완화수준 및 내용에 대해 환경부와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환경부와 개선방향 협의		

①건의기관	경기도 철도항만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원돈(02-2110-6355)
⑤제목	5-10.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 폐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매 5년 단위로 물류단지 개발 물량을 시·도별로 할당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개발 수요 반영이 곤란 ○ 우선적으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지자체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제약하는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를 폐지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⑧부처의견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는 물류단지 개발물량 규제는 없으며, ○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물류단지 개발물량은 자체계획 수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물류시설개발계획안관련 공청회 개최('08. 4. 15) ○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 담당과장회의 개최('08. 4. 25) ○ 물류시설개발계획안관련 공청회 개최('08. 4) ○ 시·도 담당과장회의 개최('08. 4)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08. 5)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최종 확정('08. 6)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건축6급 임 우진(02-2171-2525)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강 종석(02-2110-6421)
⑤제목	5-11. 물류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50㎡당 1대 → 400㎡당 1대로 완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물류시설 전반(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 창고, 차고시설 등)에 대한 주차수요 분석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여부 검토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시설물 종류 규정 정비('07.12) ○ 주차수요 분석('08.12)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 건(051-888-38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광재(02-2110-8277)
⑤제목	5-12. 부산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만 지정되어 있음 ○ 보상업무에 대해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도시공사가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법령개정(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보상전문기관 제도는 풍부한 보상실적과 보상전문 인력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보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도입한 제도임(2003.1.1시행) ○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나 현재로서는 지방공기업의 추가 확대는 곤란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유해복(053-950-2702)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정천우 사무관(2110-6289)
⑤제목	5-13. 건설공사 영업정지·통보규정 등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건설공사 실적기준 영업정지 규정(법 제82조제1항제2호) ○ 건설공사의 각종 통보의무제도(시행규칙 제25조의5 등) ○ 하도급계약 통보제도(시행령 제32조) <건의 주요 내용> ○ 실적기준 영업정지 규정 폐지 또는 실적기준 하향조정 ○ 건설공사대장, 직접시공계획서 등 통보체계의 통합, 간소화 ○ 일정금액(5백만원) 이하의 하도급계약은 통보대상에서 제외		
⑦관련 규제내용	※ 건의내용이 다수의 규제와 관련될 경우, 각 규제를 구분하여 모두 기재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건설공사 실적기준 영업정지 규정 : 수용곤란 - 페이퍼 검퍼니 등 부실업체 판단기준으로 활용 ○ 건설공사의 각종 통보의무제도 : 기 수용 -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제25조의5),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재하도급승낙통보서(제26조 제1항)는 '08년 1월부터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합·통보(시행규칙 개정) ○ 하도급계약 통보제도 : 수용곤란 - 하도급계약 통보제도는 발주자(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 및 하수급인(하도급 대금지급 보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액기준으로 통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 8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8. 11 : 차관, 국무회의 '08. 10 : 법제처 제출 '08. 12 : 국회제출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도시계획과 유해복 (053-950-2702)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태경 사무관(2110-8257,8)
⑤제목	5-14.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제한 완화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 발주자가 공사품질,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하도급 가능(법 제29조제3항) <건의 주요 내용>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도 전문건설업체 하도급과 같이 자율 하도급후 사후 통보제로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 건의내용이 다수의 규제와 관련될 경우, 각 규제를 구분하여 모두 기재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건산법 제29조제3항에서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한 것은 공사비 누출, 부실시공 등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임 ※ 전문건설업자도 동일 업종간 하도급제한 ('07. 5. 17 법 개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 8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8. 11 : 차관, 국무회의 '08. 10 : 법제처 제출 '08. 12 : 국회제출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유해복(053-950-2702)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정천우 사무관(2110-6289)
⑤제목	5-15. 건설업 양도의 공고규정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현황> ○ 종합건설업 양도공고는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게재하되, 그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일간지를,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관련협회 발행 일간지 등에 게재하도록 규정 <건의 주요 내용> ○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발행하는 1개 이상 일간지에 1회이상 게재(서울특별시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게재 삭제)하도록 하고,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 신설 ※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건설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가능		
⑦관련 규제내용	※ 건의내용이 다수의 규제와 관련될 경우, 각 규제를 구분하여 모두 기재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종합건설업 양도 시 서울소재 중앙일간지에도 공고토록 한 이유는 전문건설업과 달리 종합건설업은 영업범위가 전국적이어서 양도에 따른 각 지역의 이해관계인(시공 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건축주, 하수급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할 경우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전국 일간지 공고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타 업종인 전기공사업법에서도 양도시 신문공고만을 요구할 뿐 2회 이상 등의 제한은 없음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 8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08. 10 : 법제처 제출 - '08. 11 : 차관, 국무회의 '08. 12 : 국회제출		

①건의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제통상과 행정6급 최영철 (054-950-6232)
③소관부처	지식경제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입지총괄과 사무관 황호준 (02-2110-5305)
⑤제목	5-16. 공장증설 승인절차 간소화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등록된 공장의 면적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 증설면적에 관계없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증설하여야 함 ○ 경미한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부지면적을 증설할 경우에도 사전에 증설승인을 받은 후 증설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건의 주요 내용>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이나 공장부지면적이 경미하게 증설(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 20%이내)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도로 완화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공장설립등(신·증설, 업종변경)의 승인제도는 민원인의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즉 공장설립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을 민원인이 한꺼번에 신청하고, 승인기관(시·군·구)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 공장증설시 증가되는 부지 또는 건축면적에 대해 관련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를 민원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한 후 공장증설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보다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제도를 유지함이 바람직함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서울시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운수물류담당관 박영주 (☎6321-4244)
③소관부처	기획재정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부가가치세제과 이종수 (☎2150-4234)
⑤제목	5-17.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⑥건의내용	<건의 주요 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전액을 경감 ※ 현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여 동 경감액을 택시기사 처우 및 복지개선에 사용토록 하여 지원 중 (조세특례제한법 §106의7)		
⑦관련 규제내용	※ 해당사항 없음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승객이 부담한 부가세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현행제도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으므로 오히려 축소·폐지 필요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예산(국고보조금)을 지출하는 문제 발생 ☐ 회사택시 부가세 면세시 고속·전세버스, 고속철도 등 유사 교통수단과의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고 동일한 요구를 유발 ⇒ 시내버스·지하철 등 서민의 대중교통 수단에 한해 면세하고 있는 부가세 면세체계를 유지하기 곤란 ☐ 현재도 택시업계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 등 업계 자체의 자구노력을 병행할 필요 *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택시 구입시 개별소비세·교육세·등록세 면제, 회사택시 부가세 50% 경감, 택시 LPG사용 허용 등 ☐ 참고로, 회사택시 부가세 전액 감면시 승객에게 면세혜택이 돌아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불가능 ⇒ 택시기사의 근로조건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		
⑨해외사례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사례 없음		
⑩추진일정	※ 해당사항 없음		

①건의기관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박영주(02-6321-4244)	
③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국토해양부 김영건(02-2110-8673)	
⑤제목	5-17.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의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하도록 함 <건의 주요 내용> ○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시내버스, 지하철 등과 같이 완전 면제하여 열악한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법규 개정			
⑦관련 규제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한다.”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대중교통 확충,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 택시 공급은 지속 증가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전액 경감시 운수종사자에게 약 매월 9만원 내외의 지원이 가능하여 근로자 처우와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 기대 ○ 동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전액 감면을 이미 건의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8.5 조세감면 건의서 제출			

①건의기관	서울시 금천구 지역경제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선경(02-890-2365)
③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득규(02-2023-4361)
⑤제목	5-18. 통신판매업 직권 폐지 사항 추가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통신판매업자의 영업폐지 시 신고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 수령 기관에서 영업폐지 신고도 수령 <건의 주요 내용> ○ 금천구청의 건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1안> :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구청장에게 영업폐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계속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에서 구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주어 구청장이 직권말소 하도록 하는 안 - <2안>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관련 폐업신고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 영업폐지 신고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안		
⑦관련 규제내용	○ 동일한 법령에 의해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을 개시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폐지 이외에 영업 휴지·휴업·재개의 경우도 신고를 하여야 함 ○ 영업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됨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영업폐지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 법 제22조에 따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본 건의사항의 제목으로 “통신판매업 직권폐지 사항 추가”는 적절하지 않음 ☐ <1안>에 대한 검토 ○ 국세청의 협조만 확보된다면 면허세 부과 관련 민원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안>에 대한 검토		

	○ 중앙행정기관간(공정위와 국세청) 업무위임 또는 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 ○ 국세청에서 타 행정기관 소관의 여러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 고유의 국세업무 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염려(국세청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와 같은 타부처 또는 지자체 소관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공식적 의사표명이 선행되어야 검토가 가능) ○ 온라인, 우편,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폐지의사 확인이나 신고증 반납 이행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신고시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개로 하였으므로, 폐업시에도 역시 이를 별개로 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바람직 ※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받는 경우라도, 이를 신고필증 교부 주체인 해당 시군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 개정 사항 없음

①건의기관	서울시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차고지 관리팀 (3707-9740)
③소관부처	기획재정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양순필(2150-4241)
⑤제목	5-19.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07.1.1일부터 공공기관의 임대료가 과세전환되어 서울시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대중교통 운수업자가 임대사용료 외에 부가세를 추가 부담 <건의 주요내용> -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중 버스 운수회사의 차고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06.2.9 부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업종*에 대해 과세형평을 이유로 과세로 전환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 국가·지자체 등의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07.1.1부터 적용 ☐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부문에는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 ☐ 일반사업자와의 과세 불형평성 발생 - 동일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 받는자가 특정 사업자(예 : 버스회사)라는 이유로 부가세 면세를 하는 것은 - 다른 일반납세자(예 :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오히려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전라북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전라북도 신형춘 063-280-2946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자동차관리과 서삼호 02-2110-8699, s3535@mltm.go.kr
⑤제목	5-20 항만과 연접한 공단내 수출차 도로운행 규제완화		
⑥건의내용	<규제 현황> ○ 항만과 연접된 공단내의 선적을 위해 가까운 거리를 운행 함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도록 규정 <건의 주요내용> ○ 항만과 연접된 공단내에서 생산된 수출자동차가 선적을 위 해 공단내 도로 임시운행시 허가규정 완화		
⑦관련 규제내용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시 임시운행 허가 신청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도로를 임시운행시 예외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도록 하되,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 -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해 특정하기도 곤란한 사유(가까운 거리?)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저해 ○ 이를 위해, 임시운행기간이 1일이내로서 허가관청이 허가번호판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 이동거리가 짧고, 여타 자동차의 통행량이 거의 없음)에는 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자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조 개정) ○ 시·도지사가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허가 수수료를 면제함(시행규칙 별표30 및 별지제16호서식 개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09.9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9.1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6. 기 타

여 백

①건의기관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행5급 노 점홍(063-280-2041)
③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장 태희(02-2150-4142)
⑤제목	6-1.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법인세 부과 개선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하고 있으나, -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세액감면대상소득(이전 후 발생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등 당초 보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토록 건의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세액감면은 전체 발생소득 중 조세정책이 의도한 소득*에 한하여 허용하고 국고보조금, 이자소득 등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지방이전 사업장(공장)에서 영업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지방이전 국고보조금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경우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이 동시에 이루어져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 향후, 타 분야의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세제운용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을 감면대상 소득에 미포함 ○ 또한, 지방이전 세액감면은 현행 조세지원 제도 중 최고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과세이연을 허용하여 조세부담을 분산토록 지원 ※ 일반적인 감면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하나, 지방이전의 경우 7년간 지원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①건의기관	충청북도, 경상남도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경상남도 기업규제완화팀 김 재원(055-211-3413)
③소관부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하 창용(02-2110-7192)
⑤제목	6-2.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개선 건의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1년이내의 짧은 근로계약기간 제한으로 잦은 이직현상 발생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체류기간만료자 재고용 제한(3년) 조건은 숙련된 근로인력의 재확보 곤란 - 3년후 취업활동 후 강제 출국 없이 1회 정도 연장 또는 5년으로 조정 ○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매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위반시 기업부담 가중 - 고용허가서 발급시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없이 체류기간 자동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기준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수요보다 낮게 제한되어 있어 기피업종 사업체는 만성적 인력난 직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기준의 상향조정		
⑦관련 규제내용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근로계약기간 1년 제한 완화 : 수용】 ○ 노동관계법령에 맞게 3년의 취업기간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관계부처 간 협의 필요)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⑧부처의견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 제한 조건 완화 : 수용】 ○ 재고용시 출국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규화 예방을 위하여 5년 미만까지를 취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절차 생략 : 수용】 ○ 1년 단위 근로계약갱신시 고용허가연장(노동부) 및 근무처 변경 및 체류기간연장허가(법무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 자율 조정(현재 검토 중)할 경우 동 문제 해결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정 : 불수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 업종별,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내국인고용기회 보호 등 고용허가제도의 주요취지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 사업장별 한도를 정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한 것임 - 향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하여는 인력부족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추가허용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개선 실무위원회 개최(1.25) ○ 외국인력정책포럼 개최(2.22) ○ '08.3.27. 적정도입규모 연구용역 계약 체결(6개월) ○ '08.4. 인력부족 실태조사 실시(4.1~) ○ '08.4.30. 외국인력제도개선 T/F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 '08.7.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08.9월 국회 제출 ○ '08.12월 법개정 완료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박 용 파(02-731-6156)
③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손 한국(042-481-4541)
⑤제목	6-3.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지원범위 확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확대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은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중소기업 지원범위는 국가전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 -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하면 수혜기업은 증가하지만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오히려 감소 ○ 건의한 기준이 이러한 일반기준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범위기준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안이 시행('08.2.1)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이 필요한 바, 그간 제기되었던 서비스업종에 대한 범위확대 건의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마련('08.6) ○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및 개편안 확정('08.7)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8.10)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통신6급 박 영재(02-3707-9025)
③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배익(02-750-2720)
⑤제목	6-4.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변경요청		
⑥건의내용	< 규제 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및 등록기준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을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업진단보고의 정확성 확보와 민원인의 서류제출 준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행 기업진단 기준일의 적정 여부에 대해 타 분야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08.7.24)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실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통신6급 박 영재(02-3707-9025)
③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김 배억(02-750-2720)
⑤제목	6-5.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기준완화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등록기준미신고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월에서 1월로 단축 ○ 상호 또는 명칭 변경시 신고를 지연한 경우 영업정지 10일을 삭제하고 과태료(150만원)만 부과하여 행정처분 경감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재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상업체에 미치는 영향,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이 적정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 ※ 변경신고 지연신고시 타입법례 : 전기공사(과징금 300만원, 영업정지 없음), 일반건설(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 없음), 소방공사업(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취소)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개정('08.12)		

①건의기관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김 용 건(051-888-3834)
③소관부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이 광 재(02-2110-8277)
⑤제목	6-6. 보상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 확대		
⑥건의내용	< 규제현황 및 건의 주요내용 > ○ 보상교육시간이 직무교육으로는 짧아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 5일간 교육은 추후 새로운 교육(연간교육 50시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교육기간을 10일간으로 확대		
⑦관련 규제내용			
⑧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교육기간을 10일로 확대할 경우 업무공백의 장기화로 교육 기피, 교육수요 감소로 운영차질발생(현행 직무교육은 대부분 5일과정임) ○ 연간 교육시간(부산광역시 50시간)충족방안으로 국토해양 인재개발원 경우 사이버과정(토지보상법과정)년7회 및 집합 교육(토지행정 및 보상평가실무과정)년 6회 운영, 동 제도를 충분히 활용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